

발 간 등 록 번 호

경남교육 2025-023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이정희·이혜림·허은희·이슬기

발 간 등 록 번 호

경남교육 2025-023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책임 : 이정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혜림(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허은희(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이슬기(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경상남도교육청

제출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

요 약

I.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정책의 대표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여성가족부, 2024b: 3)
-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평가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별도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명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포함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기준이 되는 기본지침으로 조례, 규칙, 훈령을 통칭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앞으로도 성인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시간적 범위: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
- 내용적 범위: 법령(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및 자치법규 점검을 위한 성인지 가이드라인(안) 제시
- 연구방법: 문헌조사,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II.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성별영향평가(前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04년 법무부 등 9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됨. 교육청은 2007년 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임. 특히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실시 방법, 추진 및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핵심 근거 법률임
-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의 성 중립성(“모든 이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도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불평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됨.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성평등 실현에 꾸준히 기여해 왔지만,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인 제고는 이루지 못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과 함께 법령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령이 모든 정책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별적인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여 성평등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박선영 외, 2011: 4) 때문임
- 법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써,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 기준을 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분쟁을 예방·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작용함. 하지만 지금까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경험이 법 제정·집행과정에 반영되었고, 동시에 여성의 가치관과 경험이 배제되어 왔음(김선옥 외, 2008: 3)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성은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여성가족부, 2024b)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은 <표 1>과 같음
-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는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II. 성별 특성, III. 성별 균형 참여, IV. 성별 통계”로 구분되며 상세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1〉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구분	체크 리스트	성별영향 평가서	내용
1	제외	제외	◦ 폐지 법령, 직제 규정
2	작성	제외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사항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가·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 ◦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
3	작성	작성	◦ 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3~14쪽, 20쪽.

〈표 2〉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

구분	내용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I.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법령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IV.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2쪽.

□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또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진행된 교육·학술 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됨(전주상 외, 2017: 145)
-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김돌순 외, 2022)에서는,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서식 514건을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경상남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16개 교육청 중 15번째로 2021년 7월 1일 제정됨

〈표 3〉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번호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2.07.07.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7.19.
3	대구광역시	-	-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01.02.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6.02.15.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9.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12.26.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9.29.
9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03.13.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07.05.
11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9.
12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7.31.
1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8.11.
14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1.
15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04.05.
16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07.01.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10.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24.10.31. 검색)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제정 이후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

- 법령의 경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357개의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도출된 개선의견은 13건에 불과하고,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34개 개선안을 도출해서 법령보다는 개선의견이 많지만, 경남교육청의 법령과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안 도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연도	법령					사업				
	과제 수 ¹⁾	개선사항 없음 ²⁾	자체개선안 동의 ³⁾	개선의견 ⁴⁾	기타 ⁵⁾	과제 수 ¹⁾	개선사항 없음 ²⁾	자체개선안 동의 ³⁾	개선의견 ⁴⁾	기타 ⁵⁾
2011년	1		-					-		
2012년	20	0		0	20			-		
2013년	-	-		-	-			-		
2014년	10	8		0	2			-		
2015년	21	4		0	17			-		
2016년	24	20	0	0	4			-		
2017년	31	26	0	0	5			-		
2018년	25	19	0	0	6			-		
2019년	46	32	0	5	9			-		
2020년	50	26	1	2	21			-		
2021년	49	31	2	2	14	10	0	10	0	0
2022년	43	28	0	0	15	10	0	10	0	0
2023년	37	27	0	1	9	16	2	14	0	0

출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2011년~2023년)

주: 1) 과제 수: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에 등록된 과제 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2) 개선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3) 자체개선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4)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를 제시한 과제

5) 기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6) 2015년까지는 '개선사항 없음'과 '자체개선안 동의'를 모두 '원안동의'로 분석함

7)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매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주제로 선정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27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2024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진행중임

III.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 조사개요

○ 조사개요

- 조사대상: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
- 조사방법: 1차 기초분석과 2차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1차 기초분석: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작성 기준 중 성별영향평가 제외요인을 파악하여 2차 심층분석 대상을 선별함
 - 2차 심층분석: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경상남도교육청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지표별 우수사례와 개선안 도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 교육청 자치법규 1차 기초분석

- 1차 기초분석은 심층분석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을 바탕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특성상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지표에 추가하여 분석함

〈표 5〉 1차 기초분석 지표

구분	체크 리스트	성별영향 평가서	내용	1차 분석지표
1	제외	제외	◦ 폐지 법령, 직제 규정	◦ 제외
2	작성	제외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일부 포함)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 규칙은 점검 대상 포함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제외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사항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가·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제외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외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	◦ 제외
			◦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	◦ 점검 대상 포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제외
			◦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	◦ 제외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3~14쪽, 20쪽.

- 1차 기초분석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281개 중 52개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1차 기초분석 결과(제외사유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개수 (비율)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35(67.3)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11(21.1)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1(1.9)
◦ 폐지 조례(2024.09.06. 이후)	5(9.6)
합계	52(100.0)

□ 교육청 자치법규 2차 심층분석

- 2차 심층분석의 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따르되, 교육청 자치법규의 특성에 맞춰 분석지표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6개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함

〈표 7〉 2차 심층분석 지표

분석지표	점검 내용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자치법규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2) 성별 특성	◦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습니까? ◦ 자치법규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까?
3)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 결정과정에 한 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4) 성별 통계	◦ 자치법규와 관련한 별지 서식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5) 인사 및 복무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인사, 복무, 징계 등과 관련 자치법규는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6) 기타	◦ 위 사항 외에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 우수사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함

〈표 8〉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u>이 경우 중증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u>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 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겪으며 남성장애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 개선 필요 과제: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② ‘성별 특성’ 지표 : 1)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 개선 필요 과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야영수련원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중 안전장구 관련해서는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 조례〉 중 고경력과학자 멘토링 관련해서는 성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성별 특성’ 지표 : 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 우수사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학생의회) 제4항에서는 학교급·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제2항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기능 중 학생건강 검사 결과 분석 시 성별 나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학생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9〉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7조(학생의회) ④ 학생의회는 학교급· 성별 ·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 학생의회 구성 시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급·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성별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 학생건강 검사 결과 분석 시 성별·나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 개선 필요 과제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포함된 조례는 229개 중 30개이며, 이중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성별과 연령을 명시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5개로 확인됨

② ‘성별 특성’ 지표 : 3)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 우수사례 :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제5호에서는 보건안전의 범위에 질병,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성 건강’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지식과 성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전보 기준) 및 제19조(전보 특례)에서는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포함해, ‘성비위’ 근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표 10〉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학교혁신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학부모·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동에 성희롱을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2	규칙	안전총괄과	◦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 보건안전의 범위에 '성 건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지식과 성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3	훈령	총무과	◦ 제7조(전보기준)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유용, 성비위 , 갑질, 음주운전으로 전보조치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9조(전보 특례) ④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 기준 연수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4. 성비위 , 갑질 등 감사 및 조사 결과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사람	◦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전보 조치 및 필수보직기간 조정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성비위' 근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개선 필요 과제 : 교육현장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개로,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조항에 성차별적 발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③ '성별 균형 참여' 지표

- 우수사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명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문구를 그대로 원용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성별 균형을 준용하는 유형임

〈표 11〉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예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2	조례	정책기획관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②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개선 필요 과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75개인데,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④ ‘성별 통계’ 지표

- 우수사례: 성별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를 심층 분석한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한 자치법규는 7개로 나타남
- 개선 필요 과제: 교육청의 주요 정책대상인 학생, 교원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대한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자치법규는 14개로 확인됨

⑤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 우수사례: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중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자치법규로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개로, 모부성보호 및 가족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2〉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훈령	총무과	◦ 제19조(전보 특례)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전보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출산과 같은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6. 지역만기자로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	우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조례	노사협력과	◦ 제10조(대체인력 확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출산휴가 등 휴가 및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선 필요 과제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근검·절약)에서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화목 단결’,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을 담고 있으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⑥ ‘기타’ 지표 : 1)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 우수사례 :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학생의 보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부모’가 사용되었으나, ‘학부모’라는 용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학부모’와 관련 우수 자치법규는 8개로 이는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학부모’라는 용어에 내포한 차별적 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시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와 같이 ‘학부모’의 개념을 확장한 경우임

〈표 13〉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예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진로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10조(진로상담)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 ‘부모 등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 개선 필요 과제 :경상남도교육청의 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자치법규에서 ‘학부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언급한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이 층위를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해당 자치법규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학부모단체’의 대표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명시하는 조례이고, 두 번째는 해당 자치법규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대상을 ‘학부모’로 규정한 경우이고, 세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 보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부모”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자치법규가 해당함

- 이중 첫 번째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부모 등 다양한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각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분석결과 즉각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모두 26개로 나타남

⑥ ‘기타’ 지표 : 2)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

○ 개선 필요 과제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경우 ‘다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2차 심층분석 결과 현황표

- 6개 분석지표 9개 세부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229개 현행 자치법규 중 우수 자치법규는 47개이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29개로 나타남
- 이중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75개 개선과제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표 14〉 2차 심층분석 결과 현황표

분석지표		구분		비고
		우수 자치법규	개선 필요 자치법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개	1개	
2) 성별 특성	◦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	3개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2개	5개	
	◦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3개	1개	
3) 성별 균형 참여		24개	75개	추후 개선
4) 성별 통계		7개	14개	
5) 인사 및 복무 관련		2개	1개	
6) 기타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학부모 등 보호자”)	8개	26개	
	◦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	-	3개	
합계		47개	129개	

IV.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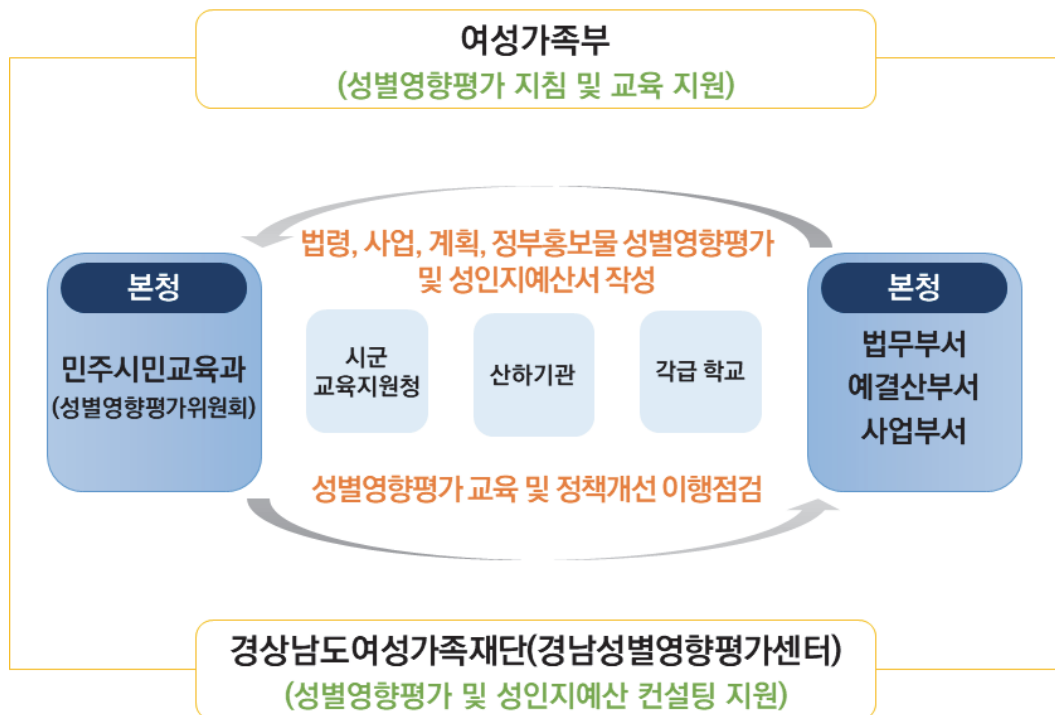
□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 앞서 6개 분석지표의 9개 세부지표에 따라 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점검 지표별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1]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나 표현 점검
- [2] 성별에 따른 신체적·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명시
- [3]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 고려 명시
- [4]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문구 명시
- [5]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명시
- [6]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추가
- [7] 인사·복무 관련 자치법규에 성평등 조직문화 가치 반영
- [8] “학부모”라는 용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수정
- [9] 조례의 내용이 누군가를 차별·배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 향후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상남도교육청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앞으로 제·개정되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전문 지원기관이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이 되도록 추적 관리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를 지속 추진할 필요 있음



[그림 1] 경상남도교육청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활용

- 자치법규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제·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법리심사 협의 단계에서 직접 각 항목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함
- ‘성평등 제·개정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가족부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준용하되,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15〉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구 분			해당 여부
점 검 지 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자치법규에 사람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재점검) ☐ 아니요
		☐ 제·개정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학생, 유모차, 몰래카메라 등)	☐ 예(→재점검) ☐ 아니요
		☐ 제·개정 자치법규의 내용 중 해당 조례로 인한 조치들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재점검) ☐ 아니요
	2) 성별 특성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3) 성별 균형 참여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위원회(당연직 제외)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위원회(당연직 제외)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위원회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재점검) ☐ 아니요
	4) 성별 통계	☐ 제·개정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에 인적 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별지 서식의 인적 항목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5) 인사 및 복무 관련	☐ 제·개정 자치법규가 교육청 구성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인사·복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6) 기타	☐ 제·개정 자치법규에 '학부모'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학부모'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모 등 보호자'와 같이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예 ☐ 아니요(→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문구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재점검) ☐ 아니요

차 례

I. 서론	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3. 연구 추진절차	7
II.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11
1.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11
2.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19
3.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25
III.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33
1. 조사개요 및 현행 자치법규 현황	33
2. 교육청 자치법규 1차 기초분석 결과	36
3. 교육청 자치법규 2차 심층분석 결과	39
4. 소결	87
IV.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91
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91
2. 향후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95
부록	99
참고문헌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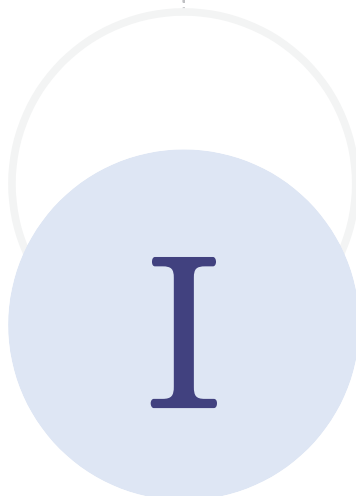
표 차례

〈표 I-1〉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4
〈표 II-1〉 성별영향평가 제도 법적 근거	12
〈표 II-2〉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및 매뉴얼(안)	16
〈표 II-3〉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17
〈표 II-4〉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	18
〈표 II-5〉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19
〈표 II-6〉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과제	20
〈표 II-7〉 여성가족부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23
〈표 II-8〉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24
〈표 II-9〉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25
〈표 II-10〉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5
〈표 II-11〉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29
〈표 II-12〉 경상남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30
〈표 III-1〉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부서별 분포 현황(2024.09.06. 기준)	34
〈표 III-2〉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2024.09.06. 기준)	35
〈표 III-3〉 1차 기초분석 지표	37
〈표 III-4〉 1차 기초분석 결과(제외사유별 현황)	38
〈표 III-5〉 분석 제외법령 목록	38
〈표 III-6〉 2차 심층분석 분석지표	40
〈표 III-7〉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우수 자치법규	42
〈표 III-8〉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개선(안)	42
〈표 III-9〉 성폭력 피해 이후 2차 피해(말이나 경험) 여부(2022)	43
〈표 III-10〉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 지표 개선(안)	45
〈표 III-1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 지표 개선(안)	46
〈표 III-1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우수 자치법규	47
〈표 III-13〉 건강장애학생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48
〈표 III-14〉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1)	48
〈표 III-15〉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49
〈표 III-16〉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2)	50
〈표 III-17〉 자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50

〈표 III-18〉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3)	51
〈표 III-19〉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52
〈표 III-20〉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4)	53
〈표 III-21〉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우수 자치법규	54
〈표 III-22〉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개선(안)(1)	56
〈표 III-23〉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1)	57
〈표 III-24〉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2)	59
〈표 III-25〉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3)	61
〈표 III-26〉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개선 필요 과제 목록	62
〈표 III-27〉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66
〈표 III-28〉 ‘성별 통계’ 지표 우수 자치법규	68
〈표 III-29〉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70
〈표 III-30〉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70
〈표 III-31〉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71
〈표 III-32〉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71
〈표 III-33〉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72
〈표 III-34〉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73
〈표 III-35〉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74
〈표 III-36〉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75
〈표 III-37〉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5)	76
〈표 III-38〉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1)	77
〈표 III-39〉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2)	78
〈표 III-40〉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개선(안)	78
〈표 III-41〉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근검·절약’ 조항 현황	79
〈표 III-42〉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1)	80
〈표 III-43〉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2)	81
〈표 III-44〉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개선조례 및 항목	83
〈표 III-45〉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관련 개선(안)	84
〈표 III-4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상 ‘지원 배제 및 제한’ 조례 현황	85
〈표 III-47〉 ‘다문화’ 관련 조례 개선(안)	86
〈표 III-48〉 2차 심층분석 결과 현황표	88
〈표 IV-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91
〈표 IV-2〉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97

■ 그림 차례

[그림 III-1]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종류별 분포 현황	34
[그림 III-2] 자치법규 공포연도별 분포 현황	35
[그림 III-3]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별 분포	65
[그림 IV-1] 경상남도교육청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96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 추진절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정책의 대표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여성가족부, 2024b: 3)
-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¹⁾고 명시함
 -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이후,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여성가족부, 2024b: 3)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도 ‘성별영향평가제도’로 명칭이 변경됨(여성가족부, 2024b: 4)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으로 명시함²⁾
 - 하지만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평가·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 법령 전체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장민선 외, 2012; 박선영 외, 2013; 박선영 외, 2014),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송효진 외, 2015; 송효진 외, 2016, 전주상 외, 2017),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함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http://law.go.kr> (2024.10.31. 검색)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성별영향평가법) <http://law.go.kr> (2024.09.06. 검색)

- 하지만 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는 다른 지역 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명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포함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24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에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를 <표 I-1>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4b: 22),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거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지, 성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지, 성별 통계를 명시하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돼 있음

<표 I-1>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항목	점검 포인트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I.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IV.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2쪽.

- 2021년 7월 1일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³⁾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교육청 소관 정책 중 성별 격차가 큰 정책을 발굴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함
- 본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박지영 외, 2022), 2023년에는 ‘진로교육’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김둘순 외, 2022)
-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의 세 번째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제는 2024년 5월에 개최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로 결정됨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경상남도교육청성별영향평가조례) <http://law.go.kr> (2024.09.06. 검색)

-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의됨. ‘자치법규’와 구분되는 ‘법령’에는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 포함됨⁴⁾
 -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치법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 규칙, 훈령을 통칭함.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범위에 따라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인 훈령도 포함하여 분석함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기준이 되는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평등한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나아가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앞으로도 성인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
- 본 연구의 분석 시점은 본 연구용역의 계약일(2024년 9월 6일)로 정함
- 분석 시점을 명시하는 이유는, 자치법규는 끊임없이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임
- 또한, 본 연구 이후에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다시 성별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경우, 연구 시작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http://law.go.kr> (2024.10.31. 검색)

○ 내용적 범위

- 법령(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및 자치법규 점검을 위한 성인지 가이드라인(안) 제시

□ 주요 내용

○ 법령(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를 대상으로 1차·2차 분석을 진행함
- 1차 기초분석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상의 제외요인을 참고하여 분석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함
- 2차 심층분석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지표별 우수사례 발굴과 개선안 도출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함

○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및 자치법규 점검을 위한 성인지 가이드라인(안) 제시

- 현행 자치법규를 성인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자치법규 제□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성인지적 논점 발굴
- 관련 법령 및 성별영향평가 지침 분석
- 국내외 자치법규 성인지적 제·개정 정책 관련 자료 분석

○ 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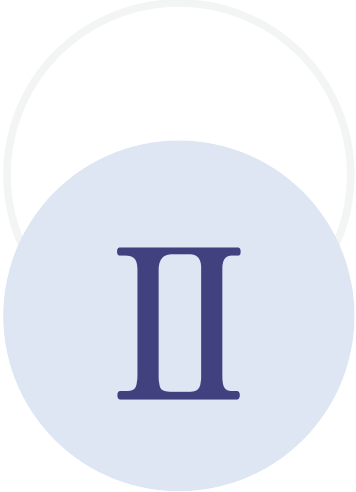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분석(현행 자치법규)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서면 및 대면 수시 실시)
- 전문가 워크숍 실시
 - 1차 : 법령 성별영향평가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공유 등
 - 2차 :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성인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3. 연구 추진절차

- 연구 추진절차는 [그림 I-1]과 같음





II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1.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2.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3.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II.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젠더 이슈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김둘순 외(2021)에서는 교육청의 주요정책 관련 젠더 이슈를 첫째, 스쿨미투 이후 촉발된 학교에서의 성평등한 교육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 둘째,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문제, 셋째, 교과서 등 교육자료의 성차별 문제, 넷째,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서의 소극적 태도 등 네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함(김둘순 외, 2021: 49-67)
-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젠더 이슈 중 성 주류화 제도 추진과 연관돼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령 성별영향평가를 둘러싼 정책환경을 먼저 살펴본 후,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함

1.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배경

□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과정

- 성별영향평가(前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서 “성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해야 한다”⁵⁾고 강조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정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現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⁶⁾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⁷⁾(여성부, 2002)

5)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292번에서는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수준의 여성발전을 위한 과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엔체제 및 모든 관련기구들은, 특히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성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정순영 외, 1995: 134-135)

6)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1일 제정됨. 이후 2002년 12월 11일 개정을 통해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를 신설하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으로 명시함.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4년도에는 법무부 등 9개 기관이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5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총 55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기초단체까지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 시행기관이 모두 190개로 확대됨(김양희 외, 2007: 15)
 - 교육청의 경우 2007년 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07년 첫해에는 15개 기관에서 한 개 사업씩 모두 15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김양희 외, 2007: 15)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 2000년대에만 해도 「여성발전기본법(現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다가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함⁸⁾
-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실시 방법, 추진 및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 및 운영을 위한 핵심 근거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I-1〉 성별영향평가 제도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양성평등 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성별영향 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http://law.go.kr> (2024.09.06. 검색)

7)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을 첫 번째 대과제로 제시하고, “1-2.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중과제 실현을 위해 “1-2-1.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함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성별영향평가법) <http://law.go.kr>(2024.12.23. 검색). 성별영향평가법은 2011년 9월 15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

- 「성별영향평가법」은 2011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특히 2014년 3월 24일 첫 번째 개정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1.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함(장명선, 2020: 17)
-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은 2018년 3월 27일 이루어진 5차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라는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오랜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장명선, 2020: 18)

□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평가

- 2000년대 초반에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정책의 성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불평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었고, 둘째, 이에 대해 정부 및 다른 부처의 성평등 실천을 의무화하고 여성정책 부처에게는 제도를 시행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임(김양희 외, 2006: 4)
-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성 중립성에 대한 가정, 즉 “모든 이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전제에 대한 부정으로 출발함. 정책을 시행할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정책 요구나 수용도도 다를 수 있음. 이렇게 성별에 따른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음
- 또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부처의 정책 활동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도록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부처에게는 이를 지원하고 점검·조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모든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도 도입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성평등 실현에 꾸준히 기여해 왔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긴 했지만, 단기간에 양적 확대를 이룬 것만큼 질적 제고는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장명선 외, 2020; 남궁윤영, 2022)
- 남궁윤영(2022)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성별영향평가서의 낮은 질적 수준, 불필요한 과제 선정, 현장 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효율

성 저하”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개선안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의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정책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책 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

2)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배경

□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대상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201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부터 명시함(여성가족부, 2012b)
- 2012년 이전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 격차의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등과 같이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음(여성가족부, 2010)
-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과 함께 법령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령이 모든 정책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별적인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여 성평등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박선영 외, 2011: 4) 때문임
- 법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써,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 기준을 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분쟁을 예방·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작용함. 하지만 지금까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경험이 법 제정·집행과정에 반영되었고, 동시에 여성의 가치관과 경험이 배제되어 왔음(김선옥 외, 2008: 3)
- 즉,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조차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법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 입법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법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규정 자체는 차별적이지 않아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김선옥 외, 2008: 4)

- 따라서 성차별적 규정 또는 성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규정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해당 규정이 성차별적 규정인지,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성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함(김선옥 외, 2008; 박선영 외, 2011: 5)
- 박선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외국 사례 등을 통해 법령 성별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들을 분석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연관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처음부터 “성(Gender)”을 고려하여 법률을 검토하는 제도로, 입법 계획단계부터 입법 이후 전 과정에서 법률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함(박선영 외, 2011: 11)
 - 특히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에서는 입법 초안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해당 법안이 성(Gender)과 무관하다면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박선영 외, 2011: 17)
 - 구체적인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우선 ‘젠더 관련성’을 점검한 뒤, 2단계에서는 ‘젠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법안을 대상으로 심화 분석을 실시함. 심화 분석에서는 “법안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 법안에 대한 대체안이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였는지” 등을 평가함(박선영 외, 2011: 19-20)
- 오스트리아의 경우, 「입법행정에서의 성 주류화 지침」에서 “법률은 실제 성과 관련한 불이익을 촉진하거나 초래해서도 안 되며, 특히 성중립적 표현을 쓸 때도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함(박선영 외, 2011: 27)
 - 오스트리아의 입법 평가 중 양성평등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4R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R”은 각각 “대표(Repräsentation), 자원(Ressourcen), 현실(Realitäten), 권리(Rechte)”를 뜻함(박선영 외, 2011: 32)
 - 구체적으로 대표(Repräsentation)는 “해당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여성 또는 남성이 더 많은가?”를 평가하며, 자원(Ressourcen)은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며, 현실(Realitäten)은 “실제로 해당 법률이 여성/남성의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또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일상 생활을 고려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며, 권리(Rechte)에서는 “해당 법률들이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박선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 사례와 한국의 입법 관련 평가제도를 바탕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지표 및 매뉴얼(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박

선영 외, 2011: 90-92)

- 2011년 법령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매뉴얼(안)을 개발할 때,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방식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1단계에서는 젠더 관련성을 심사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법령 제·개정안 내용에 대해 ‘성별 구별의 타당성’, ‘성별 영향 고려’, ‘성별 고정관념 관련성’,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성평등한 참여 보장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임(박선영, 2011: 90-92)
- <표 II-2>의 지표 및 매뉴얼(안)은 여성가족부의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 반영됨

<표 II-2>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및 매뉴얼(안)

〈1단계: 관련성 심사〉		
평가항목	구체항목	평가내용
I-1. 목적	문1. 법령 제·개정 목적	
I-2. 성별 관련성	문2. 법령안 내용의 성별 관련성	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평가 종료)
		② 성별 관련성 있음
I-3. 성별 통계	문3. 법령 내용과 관련한 성별 통계 제시	③ 성별 관련성 없음
		① 관련 성별 통계 없음
		② 있음



〈2단계: 법률 내용 심사〉		
평가항목	구체항목	평가내용
II-1. 성별 구별의 타당성	문1. 법령 적용 대상 성별 구별	◦ 법령 적용 대상 성별 구별 여부
	문2. 법령 적용 대상 성별 구별의 필요성 및 개선	◦ 성별 구별의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다면 개선 내용
II-2. 성별영향 고려	문3. 법령 적용 조치 성별 영향 구분	◦ 법령의 조치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검토
	문4. 성별영향 조정 장치	◦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정 장치 여부
II-3. 성별 고정관념 관련성	문5. 성별 고정관념 관련성	◦ 법령 내용상 성별 고정관념 반영 여부 검토
	문6. 성별 고정관념 탈피 장치	◦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여부 검토
II-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문7.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법령 내용상 성별 특성 반영의 필요성 검토
	문8. 성별 특성 반영 장치	◦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한 법적 장치 여부 검토
II-5. 성평등한 참여 보장 필요성	문9. 성평등한 참여 보장 장치	◦ 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 여부 검토

출처: 박선영 외(2011: 90-92)

☐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성은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여성가족부, 2024b)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은 <표 II-3>과 같음

- 폐지 법령, 직제 법령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모두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의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등 10개 항목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서는 작성하지 않는 제외대상에 해당함
-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대상에 포함됨

<표 II-3>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구분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내용
1	제외	제외	◦ 폐지 법령, 직제 규정
2	작성	제외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예) 기구,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사항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가·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사항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사항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 ◦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3	작성	작성	◦ 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3~14쪽, 20쪽.

-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는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II. 성별 특성, III. 성별 균형 참여, IV. 성별 통계”로 구분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여성가족부, 2024b)
-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II. 성별 특성, III. 성별 균형 참여”로 구분되다가, 2017년부터 “IV. 성별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있음

〈표 II-4〉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

구분	내용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훈·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II.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법령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IV.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2쪽.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4b: 13)
-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자치법규(안)의 관계부서 협의 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4b: 13)

2.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1)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의 분석 대상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서는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3개 분야 4,404개 법령(대국민 공모과제 3개 포함)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분석과 심층분석의 과정을 통해 129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함(장민선 외, 2012; 박선영 외, 2013; 박선영 외, 2014).
 - 여성가족부에서 3년간 진행한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분야 및 검토 과제, 개선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표 II-5〉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연도	분야	분야(상세내용)	법령	개선과제
2012년	7개	◦ 사회복지, 노동, 교육, 문화, 환경, 산업, 경제	1,174개	25건
2013년	16개	◦ 행정(행정일반), 법무, 민사, 형사, 지방제도, 경찰,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도시(국토개발·도시), 주택(주택·건축·도로), 토지, 보건·의사, 약사, 육운·항공, 해운	1,669개	31건
2014년	20개	◦ 헌법, 국가공무원, 법원, 민방위·소방, 군사, 병무, 국가보훈, 과학·기술, 관세, 담배·인삼, 통화·국채·금융, 공업규격·계량, 공업소유권, 에너지이용·광업, 전기·가스, 수자원·건설업, 정보통신, 외무, 사회복지(추가 분석), 노동(추가 분석)	1,558개	70건
	대국민 공모과제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출생등록 신고제도, 모유수유시설 설치 기준 등의 관련 법령	3개	3건

출처: 장민선 외(2012), 박선영 외(2013), 박선영 외(2014).

- 현행 법령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는 분야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지만, 성차별적 내용을 지양하고(예: 게임물, 영상물 등의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성 지양),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개선하고(예: 건전가정의례준칙 상 성별 고정관념 개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탈피),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예: 여군 모·부성권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도모하는 부분임
- 특히 2012년에 실시한 교육 분야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의 교육 활성화, 교과서의 내용 중 성차별적 요소 개선, 아동 입양을 위한 교원 휴직 보장, 학교 관리직에 있어서 여성임원 비율 확대, 학교 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등의 개선과제가 제시됨

〈표 II-6〉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과제

연도	분야	개선과제 내용
2012년	사회복지	◦ 노숙인 지원 시 성별에 따른 특성 고려 ◦ 건전가정의례준칙 상 성별 고정관념 개선 ◦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증진대책 마련 시 성별 고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기준 마련 시 성별 고려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노동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노동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교육	◦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의 교육 활성화 ◦ 교과서의 내용 중 성차별적 요소 개선 ◦ 아동 입양을 위한 교원 휴직 보장 ◦ 학교 관리직에 있어서 여성임원 비율 확대 ◦ 학교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문화	◦ 게임물, 영상물 등의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성 지양 ◦ 문화산업에서의 여성전문인력 양성 ◦ 여성의 문화생활 접근 및 주체성 강화 ◦ 문화 관련 의사결정직에서의 성별 고려
	환경	◦ 환경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 환경정책 수립에의 여성참여 제도화 ◦ 환경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산업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필요
	경제	◦ 경제총조사 시 성별 고려 ◦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성차별성 지양 ◦ 경제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2013년	행정	◦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에 있어 성별 특성 반영
	법무	◦ 보호 외국인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민사	◦ 장례비와 개호비 지급기준에 관한 성별 구분 삭제

연도	분야	개선과제 내용
2013년	형사	◦ 범죄 조사와 수용자의 처우 등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 ◦ 임신부에 대한 보호 범위와 유산·사산 포함 ◦ 강간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 중대범죄에서 성매매 유인행위 등 포함
	지방제도	◦ 돌봄의 남성참여 확대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개정 ◦ 육아휴직 기간의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경찰	◦ 성폭력 범죄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연장 ◦ 장해 등급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농업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도시 (국토개발·도시)	◦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건축물 명칭 수정 ◦ 지하 공공보도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범죄예방 장치 마련
	보건·의사	◦ 출장검진 등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성별 고정관념 탈피 ◦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성별 고정관념 탈피 ◦ 접대부 개념의 성별 고정관념 탈피 ◦ 자살실태조사에서 산후우울증 관련 조사 추가
	육운·항공	◦ 후유장애 등급의 성별 구분 삭제 및 성별 고정관념 탈피
2014년	헌법	◦ 개성공단 남한 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적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 수립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에 가사서비스업 취업자 포함
	국가공무원	◦ 승진임용 및 보직 배치 시 성별 고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정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의 간접차별요소 제거 ◦ 등록대상재산 소유자 범위의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 관리직 목표제 도입
	법원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규정 정비 ◦ 대법관 후보자 추천의 성별 고려 ◦ 사법연수원 수습 분야 중 필수 이수과목에 법여성학 추가
	민방위·소방	◦ 장해 등급별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상 소방화의 성별 구분 삭제
	군사	◦ 여군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증진방안을 위한 규정 신설 ◦ 군인 징계양정기준의 세부내용의 보완 ◦ 여군 모·부성권 보장 ◦ 군인의 상이연금등급 결정 기준의 성별 구분 삭제 및 동일기준 마련 ◦ 여성군화의 제식 규정 수정
	과학·기술	◦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방안 마련 ◦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 통계 기반 구축
	담배·인삼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내 여성조합원의 대표성 확보

연도	분야	개선과제 내용
2014년	통화·국채·금융	- 손자회사라는 법령 용어에 드러나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 - 채권추심과정에서 성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신체장애등급표의 흉터에 대한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공업소유권	- 여성 발명 활동 촉진 시책 추가 -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에너지이용·광업	공공기관 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전기·가스	- 공공기관 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 -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 분리 통계 기반 구축
	수자원·건설업	재난 안전 대책 지원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
	정보통신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규정 정비 -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자의 성별 구분 삭제와 동일기준 마련 -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에 결혼이민자 등 포함
	사회복지 (추가 분석)	-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 조항의 정비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사건 범위 확대 - 장애인 가구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장애 여성' 복지로 분류하는 규정의 정비 - 재혼 유족의 수급권 소멸 조항 삭제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요건 정비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등급 조정 - 공공매입 임차인 제한 규정 완화
	노동 (추가 분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주체 확대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규정의 실효성 보강 - 육아휴직 관련 조항의 정비
	대국민 공모과제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에 포함 -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3일 이내에 행정기관(시·읍·면의 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유수유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산후조리원 등의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 의무화

출처: 장민선 외(2012), 박선영 외(2013), 박선영 외(2014).

2)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급성에 따라 분야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의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보건복지, 교통, 문화·관광·체육 3개 분야에 대해, 2016년에는 도시건설 및 재생, 환경, 안전 3개 분야에 대해, 2017년에는 고용·노동, 교육·학술, 산업·경제통상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송효진 외, 2015; 송효진 외, 2016; 전주상 외, 2017)
- 2017년 진행한 교육·학술 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됨(전주상 외, 2017: 145)

〈표 II-7〉 여성가족부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연도	분야	상세 분야	검토 조례 수	개선과제
2015년	3개 분야	◦ 보건복지	1,520개	30건
		◦ 교통	358개	1건
		◦ 문화·관광·체육	581개	4건
2016년	3개 분야	◦ 도시건설 및 재생	627개	14건
		◦ 환경	389개	12건
		◦ 안전	391개	4건
2017년	3개 분야	◦ 고용·노동	180개	28건
		◦ 교육·학술	256개	46건
		◦ 산업·경제통상	768개	22건

출처: 송효진 외(2015), 송효진 외(2016), 전주상 외(2017).

3) 교육 분야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으로 정의됨
- 즉,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정의됨(법제처, 2023: 3)
- 최근 국민 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각 분야에 행정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법제처, 2023: 5)

- 하지만 행정규칙은 「성별영향평가법」 상의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한 연구들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⁹⁾가 운영되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초의 연구는 2019년 시행된 경찰청 행정규칙에 관한 연구임¹⁰⁾
 - 이후 보건복지부(최성은 외, 2020; 2021), 고용노동부(전기택 외, 2021), 교육부(김둘순 외, 2022)의 행정규칙을 성인지적으로 점검하는 연구가 진행됨
- 이중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을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김둘순 외(2022)의 연구에서는,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서식 514건을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II-8〉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점검 포인트	개선안 내용
행정규칙 적용 범위의 성별 구분 조항 개선	◦ 학교안전법상 장애 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에서 남녀를 구분한 것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 개선	◦ ‘엄마품’ 용어 삭제, ‘성폭행’을 ‘성비위’로 변경 등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고려 관련 조항 개선	◦ 대학생 현장실습 시 성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문구 추가 등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명시 여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문항 명시하도록 제시
성별 통계 생산 명시 방안	◦ 통계작성과 관련한 행정규칙에 성별 통계 작성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시
교육부의 인사, 복무, 징계 등의 규칙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 개선	◦ 육아휴직과 관련한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할 경우 수정하도록 제시

출처: 김둘순 외(2022)

9)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교육, 문화예술,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여성가족부만의 정책 대응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함(김원정 외, 2023: 4~5)

10) 경찰청 보도자료(2019.10.11.). “경찰청,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예규에 성차별 없애 - 61개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

3.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1)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2021년 7월 1일 제정되었음
-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16개 교육청 중 15번째로 다른 지역보다 늦게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됨

〈표 II-9〉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번호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2.07.07.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7.19.
3	대구광역시	-	-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01.02.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6.02.15.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9.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12.26.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9.29.
9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03.13.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07.05.
11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9.
12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7.31.
1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08.11.
14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7.12.21.
15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04.05.
16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1.07.01.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8.10.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24.10.31. 검색)

-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설립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포함하여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10〉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 ① 교육감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경상남도교육청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과 정책기획관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성별영향평가법) <http://law.go.kr> (2024.09.06. 검색)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이후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
-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11년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16개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울산광역시 교육청만 제외)에게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2012년에는 20개 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가, 2013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로, 2019년 5개 과제, 2020년 3개 과제(자체개선안 동의 포함), 2021년 4개 과제(자체개선안 동의 포함), 2023년 1개 과제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함
-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 10개 과제, 2022년 10개 과제, 2023년 16개 과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자체개선안 동의로 2021년 10개, 2022년 10개, 2023년 14개의 개선안을 도출함

〈표 II-11〉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연도	법령					사업				
	과제 수 ¹⁾	개선사항 없음 ²⁾	자체개선안 동의 ³⁾	개선의견 ⁴⁾	기타 ⁵⁾	과제 수 ¹⁾	개선사항 없음 ²⁾	자체개선안 동의 ³⁾	개선의견 ⁴⁾	기타 ⁵⁾
2011년	1		-					-		
2012년	20	0		0	20			-		
2013년	-	-		-	-			-		
2014년	10	8		0	2			-		
2015년	21	4		0	17			-		
2016년	24	20	0	0	4			-		
2017년	31	26	0	0	5			-		
2018년	25	19	0	0	6			-		
2019년	46	32	0	5	9			-		
2020년	50	26	1	2	21			-		
2021년	49	31	2	2	14	10	0	10	0	0
2022년	43	28	0	0	15	10	0	10	0	0
2023년	37	27	0	1	9	16	2	14	0	0

출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2011년~2023년)

주: 1) 과제 수: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에 등록된 과제 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2) 개선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3) 자체개선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4)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5) 기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6) 2015년까지는 ‘개선사항 없음’과 ‘자체개선안 동의’를 모두 ‘원안동의’로 분석함

7)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 법령의 경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357개의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도출된 개선의견은 13건에 불과하고,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34개 개선안을 도출해서 법령보다는 개선의견이 많지만, 경남교육청의 법령과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안 도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전담 지원기관인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령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개정 자치법규를 성인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젠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요청해 유의미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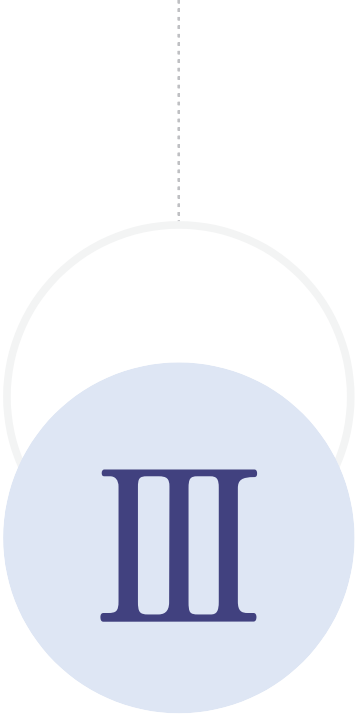
3) 경상남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매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표 II-11>과 같음
-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주제로 선정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27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개선과제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추가한 계획 수립 필요, 성별 분리 통계 수집 및 활용 필요, 영유아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공간 구성, 도서관 공간 구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유, 도서관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제도 지속 추진 등’이 제안되었음
- 2023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개선과제로는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강화, 성평등한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성평등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특성화고 여성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진로직업교육 관련 홍보물 개선’ 등이 제안되었음
- 2024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진행중인데, 앞으로도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주제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표 II-12> 경상남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연도	연구명	연구개요
2022년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 연구범위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27개소 ◦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도서관 정책 검토 - 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모니터링 조사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자 대상 정책 수요 및 업무관계자 요구조사 실시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제시
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특정성별영향평가	◦ 연구범위 :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진로교육 정책 중에서 직업교육 관련 정책 ◦ 연구내용 - 진로교육 관련 정책 특성 및 관련 젠더 이슈 파악 -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진로교육 사업참여자 대상 성별 만족도 및 개선 요구 파악 - 직업계고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청소년의 직업교육 관련 국내외 성평등한 모범사례 발굴
2024년 (본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 연구범위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 연구내용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 자치법규에 대한 1차 분석(제외대상 선정) 및 2차 심층분석 -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 방안 제시 - 자치법규 점검을 위한 성인지 가이드라인(안) 제시

출처: 박지영 외(2022), 김돌순 외(2023)



III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1. 조사개요 및 현행 자치법규 현황
2. 교육청 자치법규 1차 기초분석 결과
3. 교육청 자치법규 2차 심층분석 결과
4. 소결

III.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 이 부분에서는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1차 기초분석과 2차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조사개요 및 현행 자치법규 현황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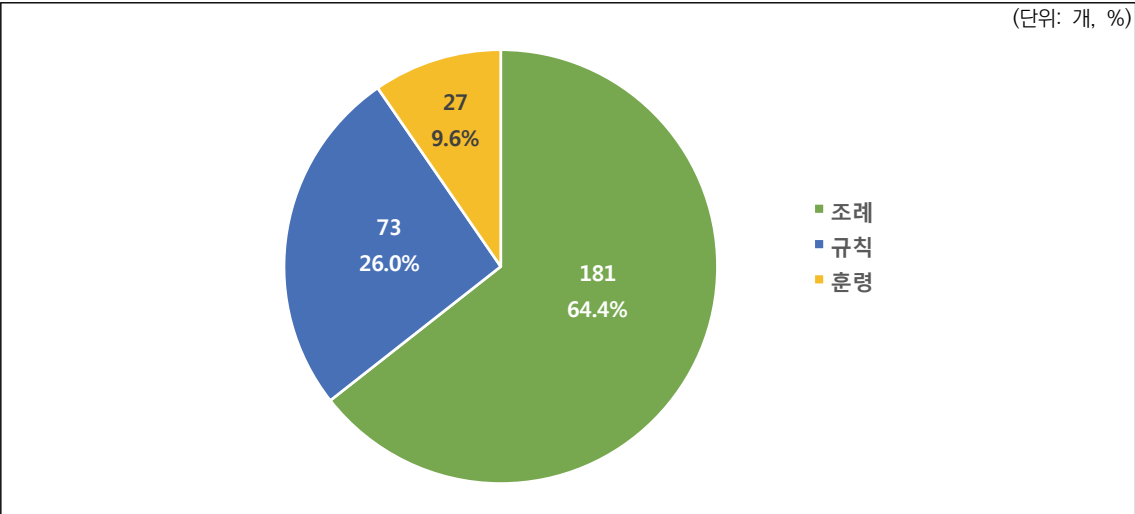
- 조사대상: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
- 조사방법: 1차 기초분석과 2차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1차 기초분석: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작성 기준 중 성별영향평가 제외요인을 파악하여 2차 심층분석 대상을 선별함
 - 2차 심층분석: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경상남도교육청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지표별 우수사례와 개선안 도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2) 현행 자치법규 현황

-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는 281개로, 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의 분포를 보임
 -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의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¹¹⁾에서는 ‘자치법규’의 범위를 조례, 규칙, 훈령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중 ‘훈령(규정 및 처리지침 등 포함)’은 「행정기본법」¹²⁾(제2조) 상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범위에 따라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인 훈령도 포함해서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현행 자치법규 281개 중 조례는 181개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며, 규칙은 73개(26.0%), 훈령은 27개(9.6%)의 분포를 보임

11)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2024.09.06. 검색)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기본법) <http://law.go.kr> (2024.09.06. 검색)



[그림 Ⅲ-1]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종류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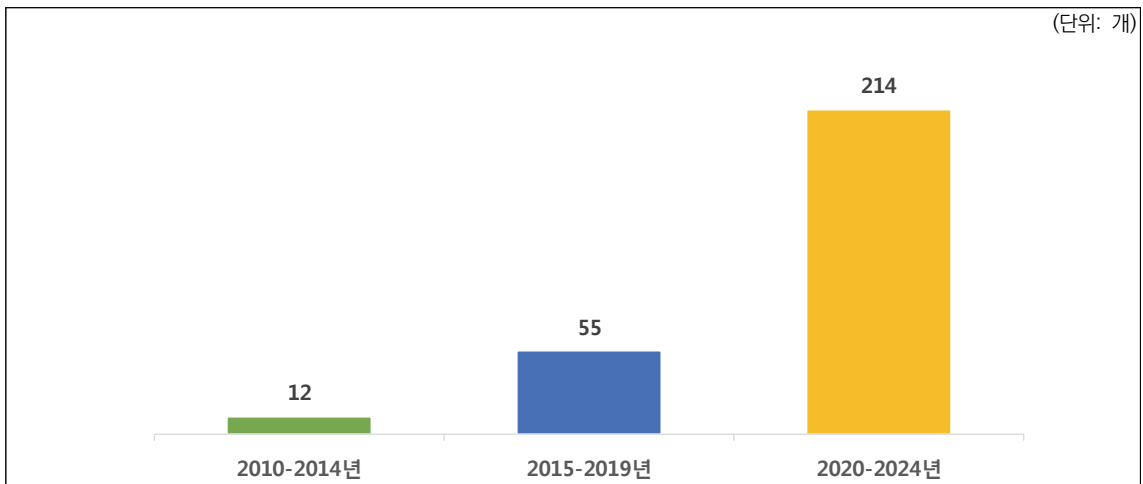
<표 Ⅲ-1>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부서별 분포 현황(2024.09.06. 기준)

(단위: 개)

번호	담당부서	구분			전체
		조례	규칙	훈령	
1	홍보담당관	2	0	0	2
2	정책기획관	29	16	6	51
3	감사관	3	5	4	12
4	학교혁신과	2	1	0	3
5	유아특수교육과	4	3	1	8
6	초등교육과	4	1	1	6
7	중등교육과	15	4	2	21
8	진로교육과	9	5	0	14
9	창의인재과	12	3	0	15
10	민주시민교육과	21	1	0	22
11	체육예술건강과	20	4	0	24
12	교육복지과	8	4	0	12
13	기후환경교육추진단	5	0	0	5
14	총무과	11	11	9	31
15	학교지원과	6	4	1	11
16	안전총괄과	4	0	0	4
17	재정과	12	7	1	20
18	노사협력과	2	2	2	6
19	시설과	7	1	0	8
20	미래학교추진단	3	0	0	3
2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2	1	0	3
22	유보통합추진단	0	0	0	0
합계		181	73	27	281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2024.09.06. 검색)

- 경상남도교육청의 현행 자치법규 281개의 부서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현행 자치법규의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정책기획관(51개)이 가장 많은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으로 총무과(31개), 체육예술건강과(24개), 민주시민교육과(22개), 중등교육과(21개) 순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의 22개 부서 중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조례·규칙·훈령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의 현행 자치법규 281개의 공포 시점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자치법규는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으로 2010년 6월 1일 공포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자치법규 281개 중 2010~2014년에 공포된 법률은 12개(4.3%)이고, 2015~2019년 공포된 법률이 55개(19.6%), 2020~2024년 공포된 법률이 214개(7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자치법규 공포연도별 분포 현황

- 경상남도교육청의 현행 자치법규 281개의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제정 자치법규는 110개로 전체의 39.1%에 해당하며, 일괄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을 모두 포함한 개정 자치법규는 171개로 전체의 60.9%에 해당함

<표 III-2>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2024.09.06. 기준)

(단위: 개, %)

구분	제정	개정	합계
자치법규 수 (비율)	110 (39.1)	171 (60.9)	281 (100.0)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2024.09.06. 검색)

2. 교육청 자치법규 1차 기초분석 결과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1차 기초분석은 심층분석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 1차 기초분석 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을 바탕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특성상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지표에 추가하여 분석함

1) 1차 기초분석 지표

-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은 <표 III-3>과 같음
 - 각 항목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모두 작성 제외대상인 ‘폐지 법령 및 직제 규정’은 본 연구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함. 특히 폐지 법령의 경우, 본 연구의 기준시점인 2024년 9월 6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인 2024년 11월 22일까지 폐지된 경우에도 반영하여 분석함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사항’,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청 자치법규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분석지표에서 제외함
 -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함
 - 먼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체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중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 규칙은 성인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함
 -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가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 등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함

〈표 III-3〉 1차 기초분석 지표

구분	체크 리스트	성별영향 평가서	내용	1차 분석지표
1	제외	제외	◦ 폐지 법령, 직제 규정	◦ 제외
2	작성	제외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예) 기구,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일부 포함)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 규칙은 점검 대상 포함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제외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가·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사항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제외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외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	◦ 제외
			◦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 점검 대상 포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제외
			◦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연도의 변경, 삭제 등	◦ 제외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3~14쪽, 20쪽.

2) 1차 기초분석 결과 : 제외법령 선별

- 1차 기초분석 지표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281개를 분석한 결과, 52개의 자치법규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외사유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이 35개로 가장 많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관련 자치법규가 11개,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이 1개로 나타남
 - 그리고 본 연구 시작일인 2024년 9월 6일 이후 폐지된 자치법규 5개도 제외대상에 해당함

〈표 Ⅲ-4〉 1차 기초분석 결과(제외사유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개수 (비율)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35(67.3)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11(21.1)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1(1.9)
◦ 폐지 조례(2024.09.06. 이후)	5(9.6)
합계	52(100.0)

○ 1차 점검 결과, 심층분석에서 제외된 52개의 자치법규 목록은 〈표 Ⅲ-5〉와 같음

〈표 Ⅲ-5〉 분석 제외법령 목록

번호	부서	자치법규명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1	정책기획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2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4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5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6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7	정책기획관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8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9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0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업무 운영 규정
11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12	감사관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13	유아특수교육과	경상남도립 병설 유치원장 및 원감 겸임 규정
14	초등교육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15	중등교육과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16	중등교육과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17	진로교육과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18	진로교육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19	총무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20	총무과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1	총무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2	총무과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23	총무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24	학교지원과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25	학교지원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26	학교지원과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27	재정과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번호	부서	자치법규명
28	재정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29	재정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30	재정과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1	재정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32	재정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33	재정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34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35	시설과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36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37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38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39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40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41	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42	정책기획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43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44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규칙
45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46	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47	정책기획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폐지 조례		
48	중등교육과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2024.09.26. 폐지)
49	민주시민교육과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2024.09.26. 폐지)
50	민주시민교육과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2024.09.26. 폐지)
51	체육예술건강과	경상남도교육청 당노병 학생 지원 조례(2024.09.26. 폐지)
52	학교혁신과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24.11.28. 폐지)

3. 교육청 자치법규 2차 심층분석 결과

1) 2차 심층분석 지표

-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 중 1차 점검에서 분석 제외대상으로 분류된 52개를 제외한 229개 현행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2차 심층분석을 진행함
 - 2차 심층분석의 지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¹³⁾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청 자치법규의 특성에 맞춰 분석지표를 변형함
 - 2차 심층분석을 위한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과 같음

13) 본 연구보고서 18쪽 <표 II-4> 참조

〈표 Ⅲ-6〉 2차 심층분석 지표

분석지표	점검 내용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자치법규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2) 성별 특성	◦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습니까? ◦ 자치법규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습니까?
3)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 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4) 성별 통계	◦ 자치법규와 관련한 별지 서식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5) 인사 및 복무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인사, 복무, 징계 등과 관련 자치법규는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6) 기타	◦ 위 사항 외에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분석지표는 크게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2) 성별 특성, 3) 성별 균형 참여, 4) 성별 통계’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5) 인사 및 복무 관련’과 ‘6) 기타’를 추가하여 6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함

- 여성가족부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와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 규칙’은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점검대상에 포함해서 ‘5)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로 분석함
- ‘6) 기타’ 지표에서는 위 사항 외에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에서는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4) 성별 통계’ 조항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시 성별 명시’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지’ 여부로 확대하여 ‘2) 성별 특성’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2차 심층분석의 결과는 세부항목별 우수사례를 먼저 제시한 후,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2) 2차 심층분석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자치법규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함
- 점검 결과,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우수 자치법규는 1개이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도 1개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높은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구분 조항을 명시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조례가 우수사례에 해당됨
 - 반면,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우수 자치법규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별 구분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이 2020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한 조치로,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그리고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 차별을 겪으며 남성 장애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 자치법규로 평가됨
 - 통계청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¹⁴⁾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2%로 경증장애인 고용률(39.6%)에 비해 18.4%p 낮게 나타남.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0%로 남성장애인 고용률(42.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23년)』. KOSIS국가통계포털.(2024.11.20. 검색)

〈표 Ⅲ-7〉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u>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u>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 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겪으며 남성장애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개선 필요 과제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 <u>여성폭력방지기본법</u> 」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u>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겪게 되는 추가적인 불이익, 비난, 고립, 직무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u>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일 수 있고, 남성 피해자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이후 사회적 편견,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조직 내 미흡한 지원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음
-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2b),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등의 비난과 낙인 유형에서 남성의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

〈표 III-9〉 성폭력 피해 이후 2차 피해(말이나 경험) 여부(2022)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10.1	11.7	7.1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8.4	8.2	8.7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8.1	6.8	10.5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7.4	7.8	6.5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봐야 가해자만 자극하게 된다	5.5	4.9	6.8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4.6	4.9	4.2
가해자는 원래 좋은(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한 것이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4.5	4.1	5.2
폭언, 폭행을 경험하였다	4.3	3.1	6.6
마치 내가 잘못해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졌다	3.7	3.5	4.1
나에 대한 개인정보, 피해 내용 등이 유포되었다	3.6	3.1	4.7
나의 경험과 비슷한 피해 상황마다 내 이름을 거론했다	3.4	2.7	4.7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2.4	1.9	3.3

출처: 여성가족부(2022b: 97)을 참조하여 재구성

주: 1. '있다'의 응답률만 제시함

2. 백분율은 응답인원 2,214명(여성 1,898명/남성 316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된 '2차 피해'의 개념은 남성 피해자가 겪는 실질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여성 폭력¹⁵⁾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는 추가적인 불이익과 피해”를 의미하고 있어, 2차 피해의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제3호의 '2차 피해'의 정의를 남성 피해자도 포괄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겪게 되는 추가적인 불이익, 비난, 고립, 직무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2) 성별 특성

○ '성별 특성' 지표에서는,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자치법

15) “여성 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http://law.go.kr> (2024.09.10. 검색)

규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점검함

- ‘성별 특성’ 지표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고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과 관련한 분야로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됨

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3개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야영수련원 운영 관련 조항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의 안전장구와 관련하여 신체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의 경우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 반영 개선 필요 과제

- 법령·계획·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또는 안전한 환경 조성, 체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지표임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2023)에 따르면, 학교급별 평균 키는 남성의 경우 초등학생 139.2cm, 중학생 165.3cm, 고등학생 173.2cm, 여성의 경우 초등학생 137.1cm, 중학생 158.4cm, 고등학생 161.7cm로 나타남. 평균 몸무게는 남성의 경우 초등학생 36.5kg, 중학생 56.8kg, 고등학생 67.5kg, 여성의 경우 초등학생 33.2kg, 중학생 49.1kg, 고등학생 56.0kg으로 나타남
- 이처럼 남녀 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등학교 3학년)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짐
- 학생들은 급격한 성장기를 거치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에서도 키와 체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키와 체형의 차이는 근력 등 운동능력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 장비구비 등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활동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보장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III-10〉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 지표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학교지원과	◦ 제11조(아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 ~ ② (생략) ③ <신설>	◦ 제11조(아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u>교육감은 아영수련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	창의인재과	◦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u>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 려하여</u>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 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개선 필요 과제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자치법규는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1개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고경력 과학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근무하다 퇴직한 연구직·기술직 출신 과학자”로 정의됨
 -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¹⁶⁾의 공공연구기관 성별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조사 시작 연도)에는 전체 공공연구기관 과학자 중 여성 비율이 10.4%(18,691명 중 여성 1,953명)였다가 2022년에는 26.0%(45,069명 중 여성 11,727명)로 증가함.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 과학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여성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근무하다 퇴직한 연구직·기술직 출신 과학자”를 ‘고경력 과학자’를 멘토로 선정할 경우 기존의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은 대부분 남성일 가능성이 큼
 - 고경력 과학자 멘토가 다 남성일 경우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교육청은 정책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KOSIS국가통계포털.(2024.11.20. 검색)

립할 때, 모든 학생이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드는 데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고경력 과학자’의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거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멘토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과학자의 경험과 역량이 멘토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III-1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 지표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재 조항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창의인재과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우수 자치법규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우수 자치법규는 2개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학생의회) 제4항에서는 학교급·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제2항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기능 중 학생건강 검사 결과 분석 시 성별 나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학생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I-1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7조(학생의회) ④ 학생의회는 학교급· 성별 ·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 학생의회 구성 시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급·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성별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 학생건강 검사 결과 분석 시 성별·나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개선 필요 과제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포함된 조례는 229개 중 30개이며, 이중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성별과 연령을 명시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5개로 확인됨
- 다만, 향후 조례 제·개정 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단계에서 성별·연령·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별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또한, 교육청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별뿐 아니라 연령(학교급)과 지역별 차이를 함께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발달 단계는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교육적 요구와 지원방안 역시 차별화가 필요함. 더불어 지역 특성에 따라 학습 환경과 자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도 중요한 분석단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가 필요한 첫 번째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른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표 Ⅲ-13> 건강장애학생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u>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u>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조례의 정책대상인 ‘건강장애학생’은 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데도 여러 제한을 경험함. 김정연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의 부모들은 현재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가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학업 공백과 제한된 교육 경험은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또래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와 학습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약물 복용 및 의료적 처치로 인한 부담은 이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학령기 학생들은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개인적 특성이 발달하는 민감한 시기임.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특히 학생 개개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적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과 개별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 따라서, 건강장애학생들이 학교 복귀 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적응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표 Ⅲ-14>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1)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유아특수교육과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u>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u>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로, 조례에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아동 또는 학생의 연령·성별·국적·입국경위·출생지·거주지 및 다문화학생 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을 명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함

〈표 III-15〉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아동 또는 학생의 연령·성별·국적·입국경위·출생지·거주지 및 다문화학생 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u>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교육통계서비스(2024)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0년 147,378명, 2024년 193,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이 117,459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47,910명, 고등학생은 27,673명으로 나타남
- 김정근(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 습득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 문제, 그리고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성별에 따른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차이는 사춘기 진입 시점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큼
-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여학생은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남학생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업 동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연령별로도 초·중·고등학생은 언어 습득과 기초 학습에서, 중·고등학생은 학업 성취와 진로 탐색에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 또한 다문화학생의 교육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침. 농산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고, 대도시보다 교육 자원과 학습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다문화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1항에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 있음

〈표 Ⅲ-16〉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2)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u>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u>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세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로, 근거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Ⅲ-17〉 자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 경쟁, 가족 관계의 변화, 학교폭력과 유해환경의 증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음.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24c)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1,901명이며,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2022)에서도, 전체 학생의 14.3%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는데, 자살 생각 비율은 여학생(17.9%)이 남학생(10.9%)보다 높게 나타남.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20.6%)과 남학생(11.7%)의 자살 생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김은경(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생각 유병률은 전기청소년(9-14세) 15.1%, 중기청소년(15-19세) 16.4%, 후기청소년(20-24세) 15.6%로 연령 집단별 차이는 없었지만, 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고 대학생까지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은 초등학교부터 정기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사정하여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함
- 박현섭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남·여학생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자살 생각 영향 변수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강도와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달랐음. 예를 들어, 약물 경험은 여학생의 자살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 성적과 흡연 경험은 여학생에게만 영향을 주었고, 거주 형태는 남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음. 이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줌
- 이에 청소년 자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계획에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또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에서 성별과 연령이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8조(실태조사) 제2항에도 ‘성별, 연령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표 III-18〉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3)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		◦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 연령별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각각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적 정보 수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표 III-19〉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u>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u>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u> 3. <u>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u>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law.go.kr> (2024.12.23. 검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교육부, 2023)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은 2022년 기준 52,981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9,415명(36.6%), 중학생 9,585명(18.1%), 고등학생 23,981명(45.3%)으로 고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됨
- 두 조례는 단순히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학업중단의 원인과 정책 수요 등은 성별,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움
 - 김현수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은 ‘학교부적응’이 주요 학업중단 사유이고, 여자 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이 핵심어로 확인되어서 또래 관계 문제와 심리적·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3b)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는 ‘부모님의 권유(홈스쿨링, 대안교육)’(26.4%),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

고 싫어서’(26.3%), ‘심리·정신적 문제’(21.9%)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심리·정신적 문제’(38.6%)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7.7%),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3.2%) 순으로 나타남. 이는 성별에 따라 학업중단 사유가 상이함을 보여줌

-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도 흡연, 음주, 약물 복용, 돈내기 게임 등의 문제행동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살생각과 시도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또한, 희망 직업교육에서 남자 청소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코딩·게임 프로그래밍, 경호원·청원경찰·소방을, 여자 청소년은 제과제빵,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상담사, 음료 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성별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도 고려하여야 함. 공운정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배양을 지원하여야 함. 반면, 고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로 설계, 직업 기술 교육, 경제적 자립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에 성별과 연령을 주요 고려 요소로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표 III-20〉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4)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조례	초등교육과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5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6조(지원사업) 2.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2. 성별, 연령별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③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우수 자치법규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중 성평등한 직장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현장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살펴봄
- 점검 결과,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본 지표와 관련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우수 자치법규는 3개임
 -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희롱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제5호에서는 보건안전의 범위에 질병,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성 건강’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지식과 성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 관련 문제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전보 기준) 및 제19조(전보 특례)에서는 ‘성비위’ 공무원은 근무 기준 연수와 관계없이 바로 전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보조치된 자의 필수 보직기간(1년 6개월)을 예외적으로 더 길게 2년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성비위’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성비위’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서 ‘성비위’ 근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21〉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학교혁신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학부모·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동에 성희롱을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규칙	안전총괄과	◦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 보건안전의 범위에 ‘성 건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지식과 성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3	훈령	총무과	- 제7조(전보기준)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유용,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으로 전보조치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9조(전보 특례) ④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 기준 연수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전보 조치 및 필수보직기간 조정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성비위’ 근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4. 성비위, 갑질 등 감사 및 조사 결과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사람	

□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개선 필요 과제

- 교육현장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개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조항에 성차별적 발언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장갑질 119에서 실시한 『2차 젠더폭력 특별 설문』 결과에 따르면(박점규 외, 2023),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31.3%가 있다고 답함.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혐오 발언을 듣거나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여성(45.1%, 44.8%)이 남성(14.2%, 12.2%)보다 모두 30%p 이상 높았으며, 직장인 19.2%는 외모를 지적하거나 복장을 통제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성별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성차별적 발언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내재된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거나 관행처럼 자리 잡은 표현들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자가 이를 성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농담’이나 ‘의례적인 말’로 치부하는 경우가 흔함. 이러한 무의식적 발언들은 직장 내에서 구성원 간 신뢰를 해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에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이 취해야 할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실질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행위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조(조치)에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할 것을 제안함

〈표 III-22〉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개선(안)(1)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감사관	-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제9조(조치)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u>성차별적 발언</u>·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제9조(조치)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u>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3)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균형 참여’ 지표에서는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등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제도화 수준을 점검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¹⁷⁾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http://law.go.kr> (2024.10.30. 검색)

-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중 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모든 자치법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자치법규에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개별 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단,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각 조례에 성별 균형 참여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즉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함
-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99개로 나타남. 이 부분에서는 99개의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와 위원회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우수 자치법규는 24개이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75개로 나타남

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우수 자치법규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명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문구를 그대로 원용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성별 균형을 준용하는 유형임. 둘 다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적용의 엄격성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음
- 먼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우수 자치법규는 12개로 확인됨

〈표 III-23〉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1)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구성 및 운영)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3	조례	정책기획관	◦ 제3조(구성) 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중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규칙	정책기획관	◦ 제14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7	조례	초등교육과	◦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8	조례	진로교육과	◦ 제18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진로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u>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u>	
9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10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u>양성평등기본법</u> , 제2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u>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12	조례	안전총괄과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마다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u>외부위원의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 다른 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문구를 준용해,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로 11개가 해당됨

〈표 III-24〉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2)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②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2	규칙	정책기획관	◦ 제4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3	규칙	정책기획관	◦ 제2조(구성) 제2항제2호.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규칙			
4	조례	감사관	◦ 제3조(구성) 제1항제1호.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규칙	학교혁신과	◦ 제5조(구성) 제1항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	조례	초등교육과	◦ 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7	조례	교육복지과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8	규칙	학교지원과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남도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 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9	조례	재정과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제1항제3호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0	조례	시설과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11	규칙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제4조(구성) ③ 당연직 단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성별 균형 참여’ 부분의 우수 자치법규는 대부분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자치법규들이 해당되는데, 이와는 달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도 우수 자치법규에 해당함
- 본 조례에서는 성별에 대해 ‘여성 공무원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뿐만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비율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III-25〉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3)

번호	구분	부서명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노사협력과	◦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여성 공무원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직장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별뿐만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균형 참여에 대해서도 명시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개선 필요 과제

-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75개로 나타남. 앞서도 밝혔듯이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례 개선(안)은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자치법규의 목록과 조항은 <표 III-27>과 같으며, 구체적인 개선안은 부록에서 제시함

<표 III-26>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개선 필요 과제 목록

번호	부서명	구분	자치법규명	조항
1	홍보담당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2	정책기획관	조례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6조(임원)
3	정책기획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	정책기획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5	정책기획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6	정책기획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7	정책기획관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8	정책기획관	규칙	◦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9	정책기획관	규칙	◦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10	정책기획관	훈령	◦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 제10조(공약사업평가위원회)
11	정책기획관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3조(구성)
12	감사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13	감사관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조(구성)
14	감사관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 제6조(구성) ◦ 제16조(구성)
15	감사관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16	유아특수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2조(구성)
17	유아특수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2조(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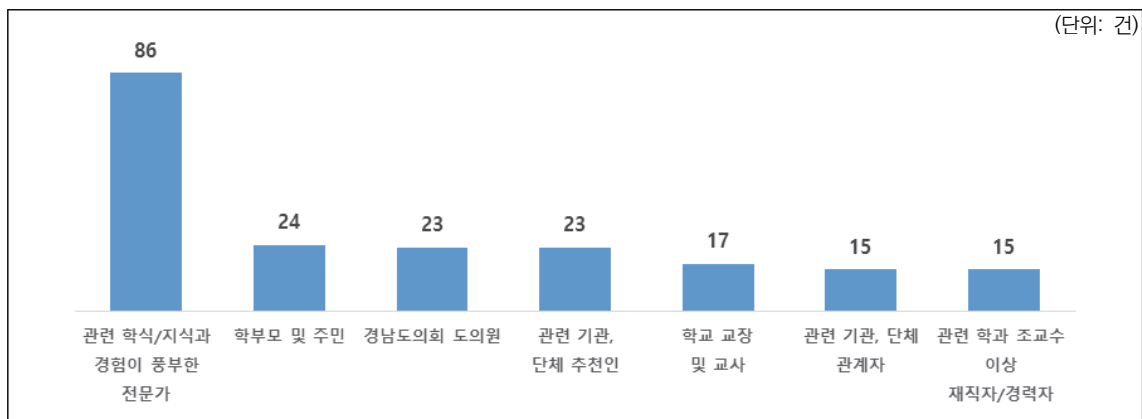
번호	부서명	구분	자치법규명	조항
18	초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
19	초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20	초등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5조(구성)
21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
22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23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
24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 제7조(구성 및 임기)
25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26	중등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27	중등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28	중등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및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4조(구성)
29	진로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협의회의 구성)
30	진로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1	진로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32	진로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33	진로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34	창의인재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5	창의인재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창의인재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6조(구성)
37	창의인재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3조(구성)
38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39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40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41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42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번호	부서명	구분	자치법규명	조항
43	민주시민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7조(위원회 구성)
44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악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45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46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구성 등)
47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1조(구성)
48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49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구성)
50	체육예술건강과	규칙	◦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9조(구성)
51	교육복지과	규칙	◦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52	교육복지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조(구성)
53	교육복지과	규칙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2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54	기후환경교육 추진단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6조(협의회 구성)
55	총무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구성 등)
56	총무과	조례	◦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57	총무과	규칙	◦ 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 제4조(구성)
58	총무과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6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59	총무과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60	총무과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 제14조(구성 등)
61	총무과	훈령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제9조(심의회 구성)
62	총무과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5조(심의회 구성)
63	학교지원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64	학교지원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구성)
65	학교지원과	훈령	◦ 경상남도립대학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 제5조(구성)
66	안전총괄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67	재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번호	부서명	구분	자치법규명	조항
68	재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69	재정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조(구성)
70	재정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조(위원회의 구성)
71	노사협력과	훈령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규정	◦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72	시설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부실 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에 관한 조례	◦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위원회 설치 등)
73	미래학교추진단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3조(구성 및 임기)
74	미래학교추진단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구성)
75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②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 성별 고려 여부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99개를 대상으로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III-3]과 같음



[그림 III-3]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별 분포

- 검토 결과, 학식·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 86건, 학부모 및 주민 24건, 경남도의회 도의원 23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인 23건, 학교 교장 및 교사 17건,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15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경력자 15건 등의 분포를 보임

- 관련 학식·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의사, 관련 논문을 출판한 석박사 등을 의미하고, 위원회가 다루는 심의의 결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3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함
- 경상남도교육청이 위촉직 위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소관 부서의 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이 특정 성별의 위촉 가능성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4) 성별 통계

- ‘성별 통계’ 지표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와 관련된 별지 서식이나 별표 등의 학생, 교원, 교직원,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직원과 같은 인적 대상 항목에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또한 성별 구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 통계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따르면, 학생, 교원, 교직원,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의 인적 사항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르면, 유아, 교원, 교직원,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의 인적 사항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Ⅲ-27〉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명	조문
양성평등기본법	◦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u>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u>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양성평등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http://law.go.kr> (2024.12.23. 검색)

- 이처럼 「양성평등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에 의거하여 수집된 성별 정보는 필요한 행정절차와 정책 수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별 관련 정보 수집 시 명확한 목적을 안내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하며, 적법한 보안 조치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¹⁸⁾
-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성별 통계 작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를 성별 관점에서 분석하고,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함. 또한, 성별 통계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http://law.go.kr> (2025.01.15. 검색)

를 통해 특정 성별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를 심층 분석한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한 자치법규는 7개로 나타남. 그리고 교육청의 주요 정책대상인 학생, 교원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대한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자치법규는 14개로 확인됨

□ ‘성별 통계’ 지표 우수 자치법규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 중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우수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이 7개가 해당됨

〈표 Ⅲ-28〉 ‘성별 통계’ 지표 우수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별지 서식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창의인재과	◦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에 장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2	규칙	총무과	◦ [별지 제5호 서식] 표창 대상자 추천서에 추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표창(상장·감사장) 대장에 표창(상장·감사장)을 받은 사람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자와 표창(상장·감사장)을 받은 사람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3	규칙	총무과	◦ [별지 제5호 서식] 임용후보자명부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실무수습계획서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임용후보자 및 실무수습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규칙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출장자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공무국외출장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5	훈령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전보희망서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전보희망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6	조례	노사협력과	◦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 원서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자 및 탈퇴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7	훈령	노사협력과	◦ [별지 제1호 서식] 전보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전보 요청서(제7조제4항 관련) 대상 노동자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 신청자와 전보 요청 대상 노동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 학생 관련 ‘성별 통계’ 지표 개선 필요 과제

- 학생과 관련한 자치법규에 ‘성별 통계’ 산출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예정)자 중 기능 인재 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학생 및 실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학생의 성별 수혜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¹⁹⁾, 경상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총 9,635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5,970명(62.0%), 여학생은 3,665명(38.0%)으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1.6배 높음. 여학생 비율은 2019년 36.0%에서 2023년 38.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23년 기준 재학생 920명 중 남학생 861명(93.6%), 여학생 59명(6.4%)으로 남학생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함. 여학생 비율은 2019년 3.0%에서 2023년 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조업, 기술직, 공업 계열 학과가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남학생 선호도가 높음. 남성 중심의 산업 구조와 사회적 고정관념 역시 남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의 영향으로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바이오, 의료기기, 환경 등 여학생 관심 분야를 포함하는 학과가 신설되고, 여성의 공학 및 기술직 진출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학생 비율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 구분과 사회적 고정관념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예정)자 중 기능인재 임용 대상자로 추천 받는 학생과 실제 임용되는 학생 대부분이 남학생일 가능성이 큼
 - 이에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

19) 교육통계서비스(KESS) <https://kess.kedi.re.kr/index> (2025.01.15. 검색)

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추천된 학생과 실제 임용된 학생의 성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특정 성별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성별 통계를 통해 특정 성별에 집중된 문제점(예: 특정 직종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성별 균형을 통해 조직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표 Ⅲ-29〉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훈령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u>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독서 분야에서 꾸준하고 뚜렷한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근거로 경상남도교육청 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신청 학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생 공적조서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이는 독서 활동 분야 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표 Ⅲ-30〉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2	규칙	창의인재과	◦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학생공적조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학생공적조서의 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통해 교육감에게 신청 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

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신청서에 지원대상 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경우, 지원대상 학생의 성별 현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남 지역 난치병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질병 분포 실태를 분석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성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보건 및 교육정책의 연계방안 수립 역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III-31〉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의 대상학생 항목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에 <u>대상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제6호(지원계획)에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 방안, 3. 안질환을 앓는 학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서(별지 서식)에 대상 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경우, 안질환 진료비 지원 신청 학생 및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의 성별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성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등 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표 III-32〉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의 대상학생 항목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에 <u>대상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 교원 및 공무원 관련 ‘성별 통계’ 지표 개선 필요 과제

- 다음으로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산출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10개 자치법규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9일 제정·시행된 자치법규임
 - 교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겪는 어려움을 성별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 관련 분쟁의 경향성 분석 및 이를 통해 직무 관련 법적 분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인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이 필요함
 - 성별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면하는 법적 분쟁의 유형과 빈도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 교원은 성차별 관련 분쟁이 더 빈번할 가능성이 있고, 남성 교원은 여성 교원보다 성비위 등 성범죄와 관련한 분쟁이 더 빈번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성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이에 성별 통계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특정 성별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성별 통계를 기반으로 특정 성별이 자주 직면하는 직무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직무 관련 분쟁의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 관련 법적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같은 이유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비용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표 Ⅲ-33〉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2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비용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비용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3월 30일 제정·시행된 자치법규임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에 피해 공무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문제를 해소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는 성별 통계를 생산할 것을 제안함
 - 성별 통계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담당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위협의 유형과 빈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특정 유형의 민원(예: 폭언, 성희롱 등)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보호 대책 수립이 가능함
 - 남성과 여성 민원 처리 담당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근무환경 문제를 파악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이 성희롱 등 성별 특유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가능함
 - 성별에 따른 민원 처리 직무 배치와 관련된 통계적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특정 성별이 특정 유형의 민원에 과도하게 배치되는지, 또는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조직 운영 개선이 가능함
 - 성별 통계를 활용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가능함. 예를 들어, 여성이 빈번히 겪는 문제(성희롱 등)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음
 - 성별 통계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관련된 장기적인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표 III-34〉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	조례	총무과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의 피해 공무원 항목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에 <u>피해 공무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임

- 성별 통계 신설을 통해 첫째, 공무원 제안 제도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성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함. 둘째, 남성과 여성이 주로 제안하는 주제나 분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관심사와 업무 성향을 반영하여 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다각화할 수 있음. 셋째, 제안 제도의 운영 및 평가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 채택 및 보상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공무원이 제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넷째, 제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별 간 행정 참여 및 성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업무 스타일, 창의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여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표 Ⅲ-35〉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제안서의 ④ 주제안자, ⑤ 공동제안자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제안서에 ④ <u>주제안자</u> , ⑤ <u>공동제안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의 제안자 성명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에 <u>제안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실시자 항목	◦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에 <u>실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표의 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시자 항목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표에 <u>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시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u>
			◦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제안 관리 기록부의 주 제안자, 공동 제안자, 제안 심사자, 실시자, 재심사 요청자 항목	◦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제안 관리 기록부에 <u>주 제안자, 공동 제안자, 제안 심사자, 실시자, 재심사 요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u>

-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2024년 2월 15일에 제정·시행된 자치법규임

- 별지 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을 통해 생산된 성별 통계는 적극 행정의 성별 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성별 통계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성별 참여 비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공무원 간 적극행정 참여의 차이를 파악하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려책이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성별 통계를 통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소송 지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균형이 없는지 점검 가능하며, 특정 성별이 징계나 소송에 더 자주 노출되거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 성별 간 직무 특성 및 위험요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 맡는 업무가 더 많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거나 징계절차에 자주 연루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가능함
- 성별 통계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성향과 직무수행 방식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예: 교육, 법률 지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소송 또는 징계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음

〈표 III-36〉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5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의 신청자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의 신청자 항목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들의 성별 제도 이용 실태 파악 및 인사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특별 승진 심사 대상자 추천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의 지방공무원 전보유에 신청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전보유에 신(요)청서에도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성별 통계를 통해 성별에 따른 각 제도(특별 승진, 명예퇴직, 조기퇴직, 공무국외출장, 전보유에 등)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특정 성별의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제도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성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함
- 성별 통계를 통해 정책 시행의 성별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나 문제점 해결이 가능함. 특히, 특별 승진 제도에서 성별 비율의 불균형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Ⅲ-37〉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5)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6	규칙	총무과	◦ [별표] 추천서의 1. 대상자 인적 사항 항목	◦ [별표] 추천서의 <u>1. 대상자 인적 사항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7	규칙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의 신청자 기재란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의 <u>신청자 기재란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의 성명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의 <u>성명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u>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8	규칙	총무과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인원수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u>인원수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9	훈령	총무과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 전보유에 신청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 전보유에 신청서의 <u>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10	훈령	노사협력과	◦ [별지 제3호 서식] 전보유에 신(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전보유에 신(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에 <u>대상 근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5) 인사 및 복무 관련

-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인사, 복무, 징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가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

□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

-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중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자치법규로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개가 해당됨
- 먼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보를 고려할 때,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전보 유예를 허용한다고 명시함
 - 이는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모부성보호 및 가족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38〉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1)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훈령	총무과	○ 제19조(전보 특례)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u>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u>인 사람 6. 지역만기자로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u>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u>(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u>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u>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전보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출산과 같은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두 번째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 등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표 Ⅲ-39〉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2)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2	조례	노사협력과	◦ 제10조(대체인력 확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출산휴가 등 휴가 및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개선 필요 과제

-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중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해당됨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근검·절약)에서는 공무원의 행동 강령으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화목 단결’,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을 담고 있으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표 Ⅲ-40〉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u>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u>	◦ <u>조항 삭제</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해당 조항은 17개 교육청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북, 제주 등 6개 교육청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조항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현황은 〈표 Ⅲ-41〉과 같음
 - 11개 교육청 중에서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세종교육청, 울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에도 경남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곳의 교육청은 해당 조항을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북은 오래전인 1997년 11월 19일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경기교육청(2021.03.16.)과 충북교육청(2024.07.10.)은 최근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2024년 9월 26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문구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른 교육청처럼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표 III-41〉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근검·절약’ 조항 현황

번호	조례명	해당 조항 현황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5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7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있음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삭제(1997.11.19.)
1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삭제(2021.03.16.)
1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삭제(2024.07.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24.11.24. 검색)

(6) 기타

- 마지막으로 ‘기타’ 지표에서는 성별과 관련한 내용 이외에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함
- 점검 결과, ‘기타’ 부분에서는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학부모’라는 용어를 ‘보호자’로 변경한 자치법규 사례, 2)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 사례 등이 확인됨

①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학생의 보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부모’가 사용되었으나, ‘학부모’라는 용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족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양부모가족 94.0%,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족 5.2%,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 0.7%, 기타 0.1%의 분포를 보임²⁰⁾

- 한 반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한 반에 1~2명 이상은 양부모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학부모’라는 용어보다는 학생의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

- ‘학부모’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차 심층분석 대상 자치법규 229개 중 8개의 우수 자치법규와 26개의 개선 필요 과제가 확인됨
- ‘학부모’라는 용어에 내포한 차별적 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자’라는 대체 용어를 사용한 우수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조례들로 3개의 자치법규가 해당됨
 -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함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로 표기해 ‘학부모’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표 III-42〉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1)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진로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2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20)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3년)」. KOSIS국가통계포털.(2024.11.20. 검색)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3	조례	교원활동보호담당관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⑤ 학부모 등 보호자 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본문에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로 명시해 기존의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

○ 두 번째 우수 자치법규는 조례 문항에 ‘보호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없이 바로 사용한 경우로 5개의 자치법규가 해당됨

- 이 자치법규에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와 같이 ‘학부모’의 개념을 확장한 경우도 있고, ‘학부모’라는 단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라는 용어를 바로 사용한 경우도 있음

〈표 III-43〉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2)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유아특수교육과	○ 제2조(구성) 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10조(진로상담)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 ‘부모 등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3	조례	교육복지과	○ 제10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⑤ 부모 등 보호자 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부모 등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4	조례	초등교육과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5	조례	교육복지과	◦ 제7조(지원중단)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와 제2항의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를 사전에 해당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에게 알려야 한다.	◦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지표 개선 필요 과제

- 경상남도교육청의 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자치법규에서 ‘학부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언급한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이 층위를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해당 자치법규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학부모단체’의 대표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명시하는 조례임. 예를 들어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 위촉 대상으로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를 명시하고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구성)에서는 위촉 대상으로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에서 추천한 자”를 명시함. 이 경우 실제로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두 번째는 해당 자치법규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대상을 ‘학부모’로 규정한 경우임. 예를 들어,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크게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촉대상으로 “학부모 대표”를 명시함.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인 조부모 등도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도 학생 보호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상을 “학부모”로만 제한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조부모 등 다양한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촉 대상을 “학부모”로 한정된 자치법규들도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세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 보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부모”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자치법규가 해당함. 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형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각적으

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라는 단어 사용 관련 세 번째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26개 자치법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는 ‘학부모’라는 용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표 III-44>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조례 목록과 해당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은 부록에서 제시함

<표 III-44>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개선조례 및 항목

번호	부서	구분	조례명	항목
1	홍보담당관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3조(교육감의 책무)
2	학교혁신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3	초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4	초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중등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6	중등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7	진로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8	진로교육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9	창의인재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 제4조(기본원칙)
10	창의인재과	규칙	◦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3조(독서 행사 등)
11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3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12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에 관한 조례	◦ 제6조(학생회)
13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2조(정의)
14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 원 조례	◦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
15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16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 리 조례	◦ 제13조(학부모의 참여)
17	민주시민 교육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 육에 관한 조례	◦ 제6조(사업 및 지원)
18	체육예술 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 원회 설치) ◦ 제8조(의견수렴)

번호	부서	구분	조례명	항목
19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 제10조(홍보 및 교육)
20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1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22	체육예술건강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23	교육복지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식재료검사)
24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
25	학교지원과	규칙	◦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3조(폐쇄 신청) ◦ 제6조(학부모 동의)
26	안전총괄과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

- 다음 3개의 조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아니지만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
-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장애인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명시함
 - 하지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휴직,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실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지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시보 임용중인 경우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지원 제한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음

〈표 Ⅲ-45〉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관련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동일 2. (삭제) 3. 동일 4. 동일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참고로 17개 교육청의 해당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해당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I-4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상 '지원 배제 및 제한' 조례 현황

번호	교육청	지원 배제 및 제한 대상
1	서울특별시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해당 조례 없음
3	대구광역시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5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울산광역시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삭제, 2019.12.26. 개정)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 공무원
9	경기도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충청북도교육청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충청남도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14	전라남도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15	경상북도교육청	1. 휴직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
16	경상남도교육청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24.11.20. 검색)

- 다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경우 ‘다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다문화교육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4. 일반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일반학생’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다문화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4. 다양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이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각각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열거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일종의 장애로 인식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각각의 세부조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표 Ⅲ-47〉 ‘다문화’ 관련 조례 개선(안)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u>일반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u> 5.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u>다양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5.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조례	홍보담당관	◦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	◦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일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성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u>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u>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u>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u> 5. <u>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u>

4. 소결

-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진행함
- 자치법규 점검은 1차 기초분석과 2차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1차 기초분석에서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요인을 파악하여 2차 분석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2차 심층분석에서는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교육청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지표별 우수 자치법규 발굴과 개선 필요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함
- 1차 점검 지표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를 분석한 결과, 52개의 자치법규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외사유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이 35개로 가장 많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관련 자치법규가 11개,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이 1개로 나타남. 그리고 본 연구 시작 일인 2024년 9월 6일 이후 폐지된 자치법규 5개도 제외대상에 해당함
-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 중 1차 점검에서 분석 제외대상으로 분류된 52개를 제외한 229개 현행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2차 심층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III-48>과 같음
 - 6개 분석지표의 9개 세부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229개 현행 자치법규 중 우수 자치법규는 47개이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29개로 나타남
 - 이중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75개 개선과제는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이를 제외한 54개 자치법규는 개선안을 반영하여 즉각 개선이 필요함

〈표 III-48〉 2차 심층분석 결과 현황표

분석지표		구분		비고
		우수 자치법규	개선 필요 자치법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개	1개	
2) 성별 특성	◦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	3개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2개	5개	
	◦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3개	1개	
3) 성별 균형 참여		24개	75개	추후 개선
4) 성별 통계		7개	14개	
5) 인사 및 복무 관련		2개	1개	
6) 기타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학부모 등 보호자”)	8개	26개	
	◦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	-	3개	
합계		47개	129개	



IV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2. 향후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IV.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 지금까지 2024년 9월 6일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281개(조례 181개, 규칙 73개, 훈령 27개)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1차 기초분석과 2차 심층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과 향후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분석은 6개 분석지표의 9개 세부지표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점검 지표별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9개로 제시하고자 함

〈표 IV-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분석지표		현행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나 표현 점검
2) 성별 특성	◦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② 성별에 따른 신체적·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명시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③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 고려 명시
	◦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④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문구 명시
3) 성별 균형 참여		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명시
4) 성별 통계		⑥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추가
5) 인사 및 복무 관련		⑦ 인사·복무 관련 자치법규에 성평등 조직문화 가치 반영
6) 기타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학부모 등 보호자”)	⑧ “학부모”라는 용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수정
	◦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	⑨ 조례의 내용이 누군가를 차별·배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나 표현 점검

- 경남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개선과제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2차 피해”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해 자치법규 1개였음
 - 경남교육청 자치법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 분야 행정규칙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엄마품 멘토링 운영’ 등의 표현에 돌봄 책임자는 ‘엄마/여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김둘순 외, 2022: 63)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18년 실시한 ‘성차별 언어 바꾸기 시민제안 이벤트’에서는 ①직업 앞에 ‘여’를 붙이는 것(예: 여학생, 여선생, 여의사, 여배우 등), ②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처녀’를 붙이는 것(예: 처녀작), ③‘유모차(乳母車)’(→‘유아차(乳兒車)’로 수정), ④‘미혼’(→‘비혼’으로 수정), ⑤‘몰래카메라’(→‘불법촬영’으로 수정), ⑥‘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범죄’로 수정) 등이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로 선정되었음²¹⁾

② 성별에 따른 신체적·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명시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2개이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개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야영수련원 운영 시 또는 과학실 내 안전장구 사용 시에는 성별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사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남성에 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 고려 명시

- 자치법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한 우수사례는 2개 자치법규(『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로 나타남
 - 근거 법률에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21)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내가 몰랐던 성차별 언어 바로 알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66002>, 2024.11.20. 검색).

명시해야 하는 자치법규는 5개로 나타남

-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구분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자치법규의 경우 기관 특성상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학교급별), 지역별로도 교육 수요와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학교급), 지역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④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문구 명시

- 스쿨미투 이후에 촉발된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 구성원들이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성비위와 관련한 문구를 조례상에 명시한 우수사례는 3개 자치법규이고, 성비위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1개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에 ‘성차별적 발언’을 추가해 성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문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명시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중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99개인데, 이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성별 균형과 관련한 문구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24개이고, 해당 문구가 없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75개로 나타남
-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 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75개의 자치법규에는 추후 점진적으로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⑥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추가

- 자치법규 별지 서식의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성별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인적 대상 항목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교육청의 주요 정책대상인 학생, 교원 및 공무원 대상 별지 서식에는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중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7개이며, 학생 관련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4개, 교원 및 공무원 관련 성별 구분 항목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10개로 나타남

⑦ 인사·복무 관련 자치법규에 성평등 조직문화(성차별 금지, 모성 보호, 돌봄 존중, 일·가정 양립 등) 가치 반영

- 경상남도교육청 구성원들의 인사 및 복무 관련 자치법규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등 모부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가정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자치법규에 명시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결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명시한 조례는 2개 자치법규이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1개 자치법규로 나타남
- 특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모범적인 가정 이룩’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구시대적인 단어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정이 필요함

⑧ “학부모”라는 용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수정

- 교육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생의 보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부모’가 사용되었으나, ‘학부모’는 양부모 가족이 아닌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학부모’라는 용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수정할 필요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중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로 사용한 조례는 8개 자치법규이며, 26개 자치법규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부모 등 보호자’로 수정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을 필요 있음

⑨ 조례의 내용이 누군가를 차별·배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점검 결과 3개의 조례들이 차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명시해 시보 임용기간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다문화교육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4. 일반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으로 명시해서 ‘일반학생’을 다문화학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서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4. 다양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세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서 국어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해, 각각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으로 열거해서 “다문화가족”이 일종의 장애로 인식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세부조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2. 향후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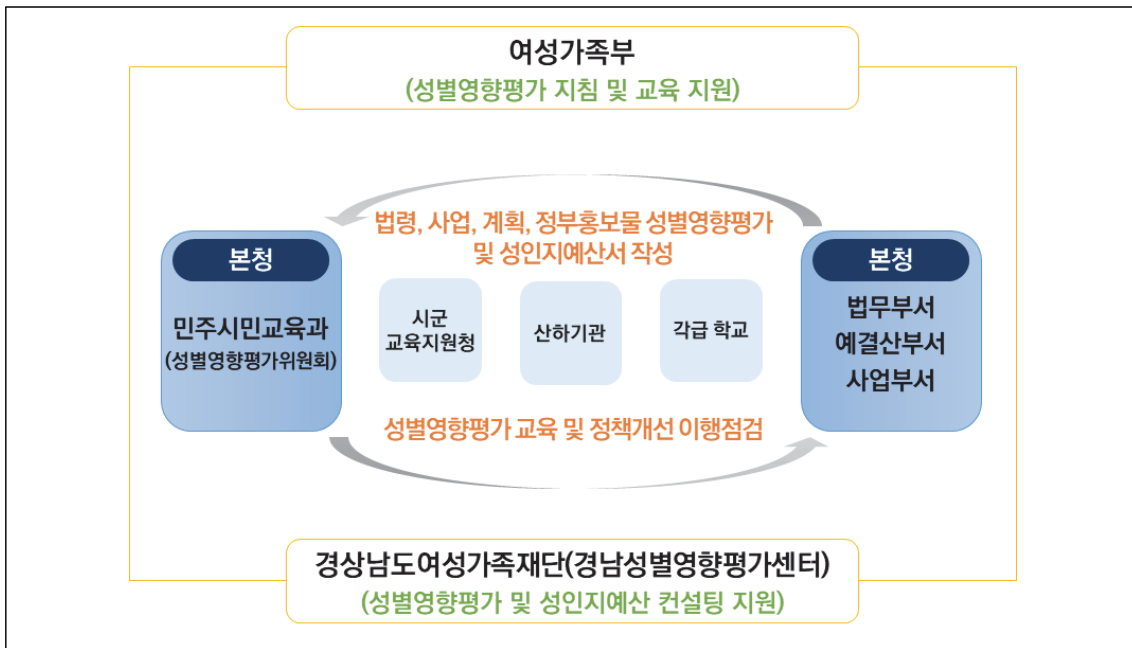
- 앞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이후에도 성인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강화, 둘째, 성평등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활용을 제안함

1)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상남도교육청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그러므로 성별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여성가족부 지정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및 정책개선 추진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등이 주요업무

임(여성가족부, 2024b: 123)

- [그림 IV-1]과 같이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이므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등 성주류화 제도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앞으로 제·개정되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전문 지원기관이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이 되도록 추적 관리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를 지속 추진할 필요 있음



[그림 IV-1] 경상남도교육청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2)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활용

-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성인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활용을 제안함
- ‘성평등 제·개정 가이드라인(안)’은 자치법규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제·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법리심사 협의 단계에서 직접 각 항목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함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성평등 제·개정 가이드라인(안)’도 체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예, 아니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활용함

- ‘성평등 제·개정 가이드라인(안)’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안에 대한 법리심사 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제·개정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가족부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준용하되,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IV-2〉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구 분			해당 여부
점 검 지 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자치법규에 사람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재점검) □아니오
		□ 제·개정 자치법규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학생, 유모차, 몰래카메라 등)	□예(→재점검) □아니오
		□ 제·개정 자치법규의 내용 중 해당 조례로 인한 조치들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재점검) □아니오
	2) 성별 특성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3) 성별 균형 참여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위원회(당연직 제외)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위원회(당연직 제외)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위원회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재점검) □아니오
	4) 성별 통계	□ 제·개정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에 인적 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있다면, 별지 서식의 인적 항목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5) 인사 및 복무 관련	□ 제·개정 자치법규가 교육청 구성원의 인사 및 복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인사·복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6) 기타	□ 제·개정 자치법규에 ‘학부모’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학부모’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모 등 보호자’와 같이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예 □아니오(→재점검)
		□ 제·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문구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재점검) □아니오

부록

부록 1. 경상남도교육청 우수 자치법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u>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u>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 추진 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겪으며 남성장애인보다 고용률이 낮은 여성장애인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2. 성별 특성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2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7조(학생의회) ④ 학생의회는 학교급· 성별 ·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 학생의회 구성 시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급·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성별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 학생건강 검사 결과 분석 시 성별·나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②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3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학교혁신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학부모·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 교육활동 침해 행동에 성희롱을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2	규칙	안전총괄과	○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 보건안전의 범위에 ‘성 건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지식과 성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3	훈령	총무과	○ 제7조(전보기준)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금형령·유용, 성비위 , 갑질, 음주운전으로 전보조치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9조(전보 특례) ④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 기준 연수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4. 성비위 , 갑질 등 감사 및 조사 결과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사람	○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전보 조치 및 필수보직기간 조정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성비위’ 근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3. 성별 균형 참여 : 24개 자치법규

① 위원회 관련 법조항 명시 : 12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행 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 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 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 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구성 및 운영) ③ 당연직 위 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 정국장·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 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3	조례	정책기획관	◦ 제3조(구성) ⑤ <u>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u>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중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u>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u>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 <u>양성평등기본법</u> 」 제21조제2항에 따라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규칙	정책기획관	◦ 제14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u>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7	조례	초등교육과	◦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u>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8	조례	진로교육과	◦ 제18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진로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u>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u>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9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0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12	조례	안전총괄과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마다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②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명시 : 1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②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규칙	정책기획관	제4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3	규칙	정책기획관	제2조(구성) 제2항제2호.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4	조례	감사관	제3조(구성) 제1항제1호.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 한다.	
5	규칙	학교혁신과	◦ 제5조(구성) 제1항제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	조례	초등교육과	◦ 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7	조례	교육복지과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8	규칙	학교지원과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남도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9	조례	재정과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제1항제3호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민간 위원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10	조례	시설과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11	규칙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제4조(구성) ③ 당연직 단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여성 참여 비율 명시 : 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노사협력과	◦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 위원)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여성 공무원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직장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별뿐만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균형 참여에 대해서도 명시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4. 성별 통계 : 7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별지 서식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창의인재과	◦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에 장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2	규칙	총무과	◦ [별지 제5호 서식] 표창 대상자 추천서에 추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표창(상장·감사장) 대장에 표창(상장·감사장)을 받은 사람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자와 표창(상장·감사장)을 받은 사람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3	규칙	총무과	◦ [별지 제5호 서식] 임용후보자명부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실무수습계획서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임용후보자 및 실무수습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규칙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출장자의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공무국외출장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5	훈령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전보희망서 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전보희망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6	조례	노사협력과	◦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 원서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자 및 탈퇴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별지 서식	사유
	자치법규명			
7	훈령	노사협력과	◦ [별지 제1호 서식] 전보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 신청자와 전보 요청 대상 노동자의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 [별지 제2호 서식] 전보 요청서(제7조제4항 관련) 대상 노동자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있음	

5. 인사 및 복무 관련 : 2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훈령	총무과	◦ 제19조(전보 특례)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u>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u>인 사람 6. 지역만기자로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u>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u>(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u>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u>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중 셋째 자녀 이상이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배우자·자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전보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출산과 같은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2	조례	노사협력과	◦ 제10조(대체인력 확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u>출산휴가 등 휴가</u> 및 질병에 의한 휴업, <u>육아휴직</u>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u>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u>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u>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u>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6. 기타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① “보호자” 개념 정의 명시 : 3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조례	진로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2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3	조례	교원활동보호담당관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⑤ 학부모 등 보호자 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양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학부모’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보호자’를 사용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 본문에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로 명시해 기존의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② “학부모”와 “보호자” 병기 : 5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1	규칙	유아특수교육과	◦ 제2조(구성) 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u>학부모 또는 보호자</u>	◦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10조(진로상담) ② 학생의 <u>부모 등 보호자</u> 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	◦ ‘부모 등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해당 조항	사유
	자치법규명			
			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3	조례	교육복지과	○ 제10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⑤ 부모 등 보호자 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부모 등 보호자’로 ‘학부모’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4	조례	초등교육과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5	조례	교육복지과	○ 제7조(지원중단)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와 제2항의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를 사전에 해당 학생(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에게 알려야 한다.	○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부록 2. 경상남도교육청 개선 필요 자치법규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u>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겪게 되는 추가적인 불이익, 비난, 고립, 직무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u>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2. 성별 특성

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반영 여부: 3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학교지원과	◦ 제11조(아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 ~ ② (생략) ③ <신설>	◦ 제11조(아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u>교육감은 아영수련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	창의인재과	◦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u>성별·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 려하여</u>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비 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3	조례	창의인재과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 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 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 감은 <u>성별 특성을 고려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5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유아특수교육과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2	조례	진로교육과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3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 연령별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			
4	조례	초등교육과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5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6조(지원사업) 2.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2. 성별, 연령별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③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 근절 관련 자치법규: 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감사관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성차별적 발언·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조치)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치)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성별 균형 참여 : 75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홍보담당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2	조례	정책기획관	◦ 제6조(임원) ② 이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임원) ② 이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3	조례	정책기획관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되, 도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되, 도민의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조례	정책기획관	◦ 제5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 제5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조례	정책기획관	◦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 성 등) 제3항제2호 민간위원은 다 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 성 등) 제3항제2호 민간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 여</u>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	조례	정책기획관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 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 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기 획관·학교정책국장·행정국장이 되 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소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명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 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국장·행정국장이 되고, 위촉 직 위원은 법률·소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 문가 4명을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 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7	규칙	정책기획관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1 항제2호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 상남도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1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 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 려하여</u>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1항제2호 위원: 9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1항제2호 위원: 9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8	규칙	정책기획관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교육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학교정책 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 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교육감이 위촉하고,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9	규칙	정책기획관	◦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변호사·법 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교 육감은 <u>성별을 고려하여</u> 10명 이내 의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 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0	훈령	정책기획관	제10조(공약사업평가위원회) 제1항 제1호 평가위원은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내 시·군 인구수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공약사업평가위원회) 제1항 제1호 평가위원은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내 시·군 인구수, 성별 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11	훈령	정책기획관	제3조(구성) ④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④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2	조례	감사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13	규칙	감사관	제3조(구성) ④ 민간위원 4명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④ 민간위원 4명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4	훈령	감사관	제6조(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6조(구성)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6조(구성)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15	훈령	감사관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16	규칙	유아특수교육과	제2조(구성) 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7	규칙	유아특수교육과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8	조례	초등교육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9	조례	초등교육과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20	규칙	초등교육과	제5조(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구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질한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1	조례	중등교육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2	조례	중등교육과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23	조례	중등교육과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24	조례	중등교육과	◦ 제7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7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25	조례	중등교육과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6	규칙	중등교육과	◦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27	규칙	중등교육과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8	규칙	중등교육과	◦ 제4조(구성) ④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구성) ④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및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29	조례	진로교육과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0	조례	진로교육과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②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②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31	조례	진로교육과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32	규칙	진로교육과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33	규칙	진로교육과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34	조례	창의인재과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35	조례	창의인재과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36	조례	창의인재과	◦ 제6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37	조례	창의인재과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8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39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40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4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교육감이 위촉한다.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42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교육감이 위촉한다.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43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제7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상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교육감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상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44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교육감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45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6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4조(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7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11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11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8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49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 담당 과장, 중등교육 담당 과장, 체육예술건강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안과 전문의가 위촉직 위원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 담당 과장, 중등교육 담당 과장, 체육예술건강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안과 전문의가 위촉직 위원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50	규칙	체육예술건강과	◦ 제9조(구성) ③ 위원은 선수 지도 및 학교 체육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9조(구성) ③ 위원은 선수 지도 및 학교 체육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51	규칙	교육복지과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상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52	규칙	교육복지과	◦ 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53	규칙	교육복지과	제22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장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학원업무 담당과장(단,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장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학원업무 담당과장(단,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2년의 위원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4	조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제6조(협의회 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55	조례	총무과	제2조(구성 등)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구성 등) 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6	조례	총무과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 심의회를 둔다.	제6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 심의회를 둔다. 단, 공적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57	규칙	총무과	제4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58	훈령	총무과	제6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규정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59	훈령	총무과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규정			
60	훈령	총무과	◦ 제14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61	훈령	총무과	◦ 제9조(심의회 구성)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2는 교육행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심의회 구성)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2는 교육행정이거나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62	훈령	총무과	◦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63	조례	학교지원과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64	규칙	학교지원과	◦ 제3조(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 제3조(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65	훈령	학교지원과	◦ 제5조(구성)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	◦ 제5조(구성)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
	경상남도립대학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규정	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66	조례	안전총괄과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68	조례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규칙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조(구성) ② 위원장은 본청의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구성) ② 위원장은 본청의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70	규칙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훈령	노사협력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규정	◦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72	조례	시설과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부실 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에 관한 조례	◦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람으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73	조례	미래학교추진단	◦ 제3조(구성 및 임기)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74	조례	미래학교추진단	◦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조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4. 성별 통계

☐ 학생 관련 ‘성별 통계’ 지표 개선과제 : 4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훈령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기능인재 임용 추천서의 <u>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규칙	창의인재과	◦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학생공적조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에 <u>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u> ◦ [별지 제3호 서식] 학생공적조서의 <u>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u>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3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의 대상학생 항목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에 대상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의 대상학생 항목	◦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에 대상학생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			

☐ 교원 및 공무원 관련 ‘성별 통계’ 지표 개선과제 : 10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2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비용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비용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번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규칙			
3	조례	총무과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의 피해 공무원 항목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에 피해 공무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제안서의 ④ 주제안자, ⑤ 공동제안자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제안서에 ④ 주제안자 , ⑤ 공동제안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
			◦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의 제안자 성명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에 제안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실시자 항목	◦ [별지 제4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에 실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표의 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시자 항목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표에 제안자, 공동제안자, 실시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
			◦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제안 관리 기록부의 주 제안자, 공동 제안자, 제안 심사자, 실시자, 재심사 요청자 항목	◦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에 주 제안자, 공동 제안자, 제안 심사자, 실시자, 재심사 요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각각 신설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5	규칙	정책기획관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 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의 신청인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의 신청자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의 신청자 항목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6	규칙	총무과	◦ [별표] 추천서의 1. 대상자 인적 사항 항목	◦ [별표] 추천서의 1. 대상자 인적 사항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7	규칙	총무과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의 신청자 기재란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의 신청자 기재란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의 성명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의 성명 항목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8	규칙	총무과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인원수 항목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인원수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9	훈령	총무과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 전보유예 신청서의 인적사항 항목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 전보유예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10	훈령	노사협력과	◦ [별지 제3호 서식] 전보유예 신(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전보유예 신(요)청서(제8조제1항 관련)에 대상 근로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5. 인사 및 복무 관련 : 1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u>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u>	◦ <u>조항 삭제</u>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6. 기타

①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 26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홍보담당관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조례	학교혁신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 학부모 ·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련 당사자"란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이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기타 특정집단 및 개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조례	초등교육과	◦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제6조(지원 방법) ② 교육감은 대상 학교 및 학부모 ,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부모 등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 제6조(지원 방법) ② 교육감은 대상 학교 및 부모 등 보호자 ,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조례	초등교육과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부모 등 보호자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5	조례	중등교육과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학생 학부모 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학생 부모 등 보호자 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6	규칙	중등교육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간의 상호평가,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의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 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간의 상호평가,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 등 보호자 의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부모 등 보호자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7	조례	진로교육과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8	규칙	진로교육과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 부모 등 보호자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	조례	창의인재과	◦ 제4조(기본원칙) 경상남도교육감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 교육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제4조(기본원칙) 경상남도교육감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부모 등 보호자 , 교육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10	규칙	창의인재과	◦ 제3조(독서 행사 등)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독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학생과 학부모 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제3조(독서 행사 등)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독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 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11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13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4. 학생 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 제13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4.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동반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2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6조(학생회) ③ 교직원과 학부모 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생회) ③ 교직원과 부모 등 보호자 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3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구성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구성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 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 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4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모 등 보호자 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15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16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13조(학부모 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부모 에게 체험학습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부모 등 보호자 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부모 등 보호자 에게 체험학습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17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 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18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 ,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고 학생, 부모 등 보호자 ,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9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장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20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악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1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등)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모 등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2	조례	체육예술건강과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②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부모 등 보호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23	조례	교육복지과	제8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등 보호자나 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4	조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25	규칙	학교지원과	- 제3조(폐쇄 신청)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 제3조(폐쇄 신청)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폐쇄 부모 등 보호자 동의서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 제6조(<u>학부모</u>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u>학부모</u>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u>학부모</u> 동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u>학부모</u> 동의	- 제6조(<u>부모 등 보호자</u>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u>부모 등 보호자</u>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u>부모 등 보호자</u> 동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u>부모 등 보호자</u> 동의
26	조례	안전총괄과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직원, <u>학부모</u>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직원, <u>학부모 등 보호자</u>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 :

3개 자치법규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1	조례	총무과	◦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동일 2. (삭제) 3. 동일 4. 동일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	조례	진로교육과	◦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번호	구분	부서명	현행	개선(안)
	자치법규명			
			4. <u>일반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u> 5.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4. <u>다양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5.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3	조례	홍보담당관	◦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u>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u>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일 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u>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u> 5. <u>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u>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온라인자료〉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https://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015200100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KESS(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문헌자료〉

경찰청 보도자료(2019.10.11.). “경찰청,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예규에 성차별 없애 - 61개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

공윤정·정애경·김영화·김혜랑·김현령·이주은. 2023.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격교육, 17(3), 5-27.

교육부. 2023.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교육부.

국가기술표준원. 2023.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보고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김경근.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통계청 통계개발원.

김돌순·김효주·남정연. 202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교육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돌순·김효주·정윤미·문은영·한지영. 2022. 『교육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선옥·박선영·한지영·차은영. 2008. 『법령입안심사기준으로서의 성평등심사에 관한 연구』. 법제처(이화여대 법과대학 젠더법학연구소).

김양희·김경희·류연규·윤용중. 2006.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의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김경희·류연규·장윤선·박영란·김혜란. 2007.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최유진·정윤미. 2023.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 2018. 『청소년의 연령집단별 자살생각 위험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8(1), 42-50.

- 김정연·박은혜·김유리. 2015.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1), 53-77.
- 김현수·김성은·박하나. 2021. 『남녀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48(3), 5-24.
- 남궁윤영. 2022. 「성별영향평가제도 정책개선안 도출 과정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 『KWDI 이슈페이퍼(2022년 9월 9일 발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박복순·류연규·송치선. 2011.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박복순·김돌순·송효진·한지영·황의정·김진·배그린. 2013.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박복순·송효진·구미영·황의정·김진·한지영. 2014.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점규·배나은·오진호·여수진. 2023. 『2차 젠더폭력 특별 설문』.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박지영·오지혜·이인숙·이정희·이혜림. 2022.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박현섭·홍성애. 2020.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 요인의 성별 비교』. 대한보건연구, 46(3), 47-57.
- 법제처. 2023. 『2023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내가 몰랐던 성차별 언어 바로 알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66002>, 2024.11.20. 검색).
- 송효진·박선영·박복순·남궁윤영·장명선·장민선·장미현·김현아·김효영·장용준·김민지. 2016.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효진·윤덕경·박복순·남궁윤영·장명선·한지영·김현아·김효영. 2015.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교통·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a.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b.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c.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d.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a.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b.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a.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c. 『2024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장명선·문지영·안태윤·이해진·김세현·홍민. 2020.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이화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 젠더법학연구소).
- 장민선·김정순·최유·박귀천·한지영. 2012.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국법제연구원).
- 전주상·이창원·조문석·김희강·임현·김현주. 2017. 『지방자치단체 조례(고용·노동, 교육·학술, 산업·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한성대학교).
- 정순영·강선혜·김영혜·서미석·주영미.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 질병관리청. 2022.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질병관리청.
- 최성은·김가빈·류유선·송정옥·유란희·이연복·장은정·신동현·정혜민·최상훈. 2020. 『행정규칙 대상 성인지적 관점 일괄 점검(2차)』. 보건복지부(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은·김가빈·류유선·이연복·장은정·유란희·신동현. 2020. 『행정규칙 대상 성인지적 관점 일괄 점검』. 보건복지부(대전세종연구원).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인	쇄	2025년 2월 5일
발	행	2025년 2월 5일
발	행	처
연	구	수
행	기	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우 : 51430)
		Tel. (055)713-7085 H.P. https://gnwff.or.kr
인	쇄	처
		예인기획(055-287-336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